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73호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86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869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인천광역시조례 제687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14

규 칙

-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3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22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2호 도시계획시설(대2-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4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외 12개 노선) 실시계획 고시 6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5호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6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8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7호 도시관리계획(원적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9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1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공고·열람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1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26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1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32호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구별 배분계획 공고 12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2-221호 은골1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12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41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26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41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29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4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58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59호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5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7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66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75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868호

공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6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6.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업무 관련 교직원들을 위한 상담·교육·치료·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

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 규정(제3조)
- 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6조)
- 라. 심리적 위기학생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8~9조)
- 마. 학교의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9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69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69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관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변상)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구 분	용지규격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u>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u>」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u> -----.</p>
<p>제2조(입관료) <u>입관료</u>는 무료로 한다.</p>	<p>제2조(입관료)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u> <u>입관료</u>---</p>
<p>제3조(입관의 제한 등)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u>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u>의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감염병환자</u> 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에 의한 <u>정신질환자</u>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 <u>도서관의 질서 또는 분위기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u> 	<p>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u>인천광역시 교육청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u>은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u>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u> 2. <u>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u> 3. <u>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u>

4. 흥기나 폭발물 및 그 밖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적당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변상)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생략)

[별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구분	용지규격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제4조(변상) 이용자-----

--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

제5조(사용료) 이용자가 도서관---
----- 경우
에는 별표의 사용료-----
--.

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사용료

구분	용지규격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설치)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 도서관 입관 제한 사유 중 특정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행위 중심의 제한으로 개선,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제1조)
- 나. 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사항(제2조)
- 다.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제한 범위(제3조)
- 라. 도서관 이용자의 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4~5조)

인천광역시 조례 제6870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
송사무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87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각종 신청사건

제3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송에 관한 사무(이하 “소송사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교육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
6.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 또는 회수 포기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및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인행위자에게 구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만, 원인행위자가 구상금 행사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인행위자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인행위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교육국장

2. 교육행정국장

3. 감사관

4. 노사협력과장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대면으로 회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

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수행하는 소송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마련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제1~2조)
- 나.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6~10조)

규 칙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31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 절차 및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라 함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사람(제2호 중 변호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총괄 및 소송소관부서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

인이 되는 소송사건은 노사협력과장이 총괄하고,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응소(소송참가를 포함한다)·반소·화해·조정·상소 또는 상소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제출
4. 소송수행자 등의 추천
5.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4조(제소 등)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 사유 및 사건경위서
4. 상대방의 재산조서 및 증거서류

5. 그 밖의 증거자료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요구를 받은 노사협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자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판단
3.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 의견

③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소된 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소송고지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소송소관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교육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교육감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해당 소송사건 종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3. 타 시·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한 경우
5. 공개모집 시 2회 유찰된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제6조에 따라 지정·선임된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6조에 따라 지정·선임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

2. 소송사건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3. 패소사건에 대한 패소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4.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5. 그 밖에 소송사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입·법률 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을 소송담당자로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중 1인은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 수집, 현장검증 안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송사건(본안사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은 제외한다)의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법무담당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상소 등) ①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내용, 소송대리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에 따른 이익의 정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상소해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승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의 회수 등 판결내용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소송비용의 회수업무 절차 등) ①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지침 및 지휘에 따라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패소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노사협력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5.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 경우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사유가 원인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7. 그 밖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상권 행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의 패소로 법원 집행관이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보유물품 등을 강제집행 하는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 및 정당한 강제집행인지에 대한 확인
2. 집행관의 신분 및 집행자격 유무 확인
3. 집행관 고시문·집행력 있는 정본·영수증서 등 징구

제17조(임의변제 등) ① 교육감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변제공탁 또는 임의변제 할 수 있으며, 변제공탁 또는 임의변제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상소심 동안의 이자
2. 상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3. 상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기지급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등

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

2. 판결문(전심급) 정본
3. 판결확정증명서(판결 확정 전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7.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판결 확정 전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대한 구상권 면제
2. 적극행정으로 인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 공무원의 요청 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변호인·소송대리인 추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나. 정부법무공단

다.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19조(다른 기관에의 통보)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진행상황 및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거나 심사결정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제20조(국가소송의 수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의 회수업무 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업무 절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수

행하는 소송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소관부서 및 소송담당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내 용 (소송물가액)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비용
행정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400,000원	○ 60%이상 승소시 : 착수금×승소비율	○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기타비용 : 실액
	2. 본안사건 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930,000원 민사소송에 준함		
	3. 환송심	○ 원심 착수금의 50%		
민사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00,000원 400,000원	○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 착수금×50%	○ 여비: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의 제2호에 의한 여비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가. 1,000만원 미만	600,000원		
	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400,000원		
	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0,000원		
	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00,000원		
	마.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000,000원		
	바. 4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000,000원		
	사.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0,000원		
	아. 50억원 이상	6,000,000원		
3. 환송심	○ 원심 착수금의 50%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 다음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

소 속	성 명(생년월일)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 가.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
- 나. 변제의 영수
- 다. 반소의 제기
- 라.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바. 대리인의 선임
- 사.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통

20

신청인 겸 위임인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연락처 : 032-000-0000

○○법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2.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문서번호 : _____ 년 월 일

수신 : _____ 발신 : _____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법 무 부		
	검 찰		
원 고	피 고		
담 당 자		사 건 구 분	공 동 · 지 휘
소 송 대 리 인 (소 송 수 행 자)		전 화 · F A X	
변 론 기 일		다 음 기 일	[]선고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입증방법
원 고		
피 고		
재판부지시사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대 리 인 (소송수행자)의견		
첨 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목록 []증인신문사항 []증거신청서 []기타()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청렴서약서

변호사	성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에 있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약하고, 본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소송대리인 금지행위 >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변호사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소송담당자 지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귀하를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상대방 :
2. 사건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소송담당자의 직무]

-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의 출석·입회 및 보고
- 기타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원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원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원고명	인용액	인용액	원금	이자	합계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급기관의 장) 귀중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문(전심급) 정보 2. 판결확정증명서(다만, 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각서(판결 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	--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지급기관의 장) 귀중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각 서

원고 _____ 와 피고 _____ 간의 _____ 사건은 _____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금액
 _____ 원을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반환
 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 절차 및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나.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 선임 등에 관한 사항(제6-8조)
- 다. 상소 여부 결정 및 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사항과 소송비용 회수 및 구상권 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11~15조)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2호

도시계획시설(대2-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사업
- 명칭: 원창동 394-17번지 일원 물류센터 변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701.5㎡
- 규모: 대로2-116호선 변속차로 및 보도설치 L=82.70m, B=9.75m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 1가)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서구 원창동	394-17	창	14,551.7	164.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2	서구 원창동	394-18	창	14,229.8	1.4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합계		2필지		28,781.5	165.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116호선 변속차로 및 보도 L=82.70m, B=9.75m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중구청(도시계획과, ☎ 032-760-7517),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및 내용

가. 시가지경관지구 결정(변경)

- 위 치: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면적) 781,689㎡
- 변경내용: 지구의 세분, 경계부 정비, 면적 등 정비 37개소

나.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 위 치: 중구 항동6가 일원 / (면적) 470,878㎡

○ 변경내용: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경(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70,890	2,363	양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변경	1	개항로, 송림로	시가지 경관지구	경동 239-7번지, 송림동 31-61번지	52,677	1,756	양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기정	2	화도진로, 우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234-12번지, 송의동 118-7번지	106,374	2,894 4,190	편측15	-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변경	2	수문통로, 우현로, 화도진로, 인중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화평동 407-1번지, 송의동 75-5번지	86,941	2,898	양측15	-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폐지	2	화도진로, 수문통로	일반 미관지구	화평동 407-1번지, 송현동 67-6번지	1,725	115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3	서해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흥동3가 31-69번지, 신흥동3가 7-308번지	13,350	890	편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3	서해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3가 31-69번지, 신흥동3가 7-308번지	12,241	816	편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기정	4	제물량로	중심지 미관지구	사동 2-5번지, 신생동 9-3번지	4,050	270	편측15	-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변경	4	제물량로	시가지 경관지구	사동 2-5번지, 신생동 9-3번지	2,881	192	편측15	-	지구단위 계획 (자유공원 주변지역)
기정	7	서해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 7-79번지, 유동 2-67번지	22,800	605 915	편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변경	7	서해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3가 7-79번지, 송림동 203-14번지	18,612	620	양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기정	10	참외전로, 경인로	중심지 미관지구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123,240	4,040 4,176	편측15	-	
변경	10	참외전로, 경인로	시가지 경관지구	인현동 22-38번지, 주안동 1542-10번지	107,455	3,582	양측15	-	
기정	13	광장로, 부평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185-53번지, 부평동 879-3번지	55,125	1,920 1,755	편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변경	13	광장로, 부평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185-53번지, 부평동 879-3번지	47,781	1,593	양측15	인고제1063호 (1987.1.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대정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561-5번지, 부평동 374-16번지	24,000	800	양측15	-	
변경	14	대정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561-5번지, 부평동 374-16번지	23,525	784	양측15	-	
기정	15	시장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159-28번지, 부평동 146-1번지	24,000	800	양측15	-	
변경	15	시장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159-28번지, 부평동 146-1번지	21,268	709	양측15	-	
기정	16	부흥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442-25번지, 부평동 115-13번지	22,800	760	양측15	-	
변경	16	부흥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442-25번지, 부평동 115-13번지	19,180	639	양측15	-	
기정	18	장제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161-12번지, 부평동 98-87번지	41,400	1,380	양측15	-	
변경	18	장제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161-12번지, 부평동 98-87번지	35,680	1,189	양측15	-	
기정	33	길주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남동 526-3번지, 석남동 493번지	9,900	660	편측15	-	
변경	33	길주로	시가지 경관지구	석남동 526-3번지, 석남동 493번지	11,328	755	편측15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4	가정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남동 510-6번지, 석남동 509번지	10,950	365	양측15	-	
변경	34	가정로	시가지 경관지구	석남동 510-6번지, 석남동 509번지	10,166	339	양측15	-	
기정	35	열우물로	중심지 미관지구	십정동 407-21번지, 십정동 407-1번지	5,100	170	양측15	-	
변경	35	열우물로	시가지 경관지구	십정동 407-21번지, 십정동 407-1번지	4,745	158	양측15	-	
기정	36	열우물로, 석정로	중심지 미관지구	십정동 417번지, 송의동 103-70번지	13,200	440	양측15	-	
변경	36	열우물로, 석정로	시가지 경관지구	십정동 417번지, 송의동 103-70번지	11,515	384	양측15	-	
기정	37	경원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534-91번지, 부평동 160-1번지	23,550	760 810	편측15	-	
변경	37	경원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534-91번지, 부평동 160-1번지	21,558	719	양측15	-	
기정	38	원적로	중심지 미관지구	산곡동 87-900번지, 산곡동 181-68번지	4,800	320	편측15	-	
변경	38	원적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87-900번지, 부평동 38-184번지	5,570	186	양측15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38	원적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62-51번지, 부평동 38-184번지	2,100	70	양측15	-	
기정	39	수문통로	중심지 미관지구	송현동 68-15번지, 송현동 66-25번지	2,175	145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39	수문통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현동 68-15번지, 송현동 66-20번지	2,032	135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41	마장로	중심지 미관지구	산곡동 181-63번지, 산곡동 96-26번지	6,750	450	편측15	-	
변경	41	마장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181-63번지, 산곡동 96-26번지	6,241	416	편측15	-	
기정	51	제물량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흥동3가 39-3번지, 답동 18-5번지	33,450	1,115	양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변경	51	제물량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3가 39-3번지, 답동 18-5번지	33,397	1,113	양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기정	54	신포로	중심지 미관지구	사동 9-1번지, 사동 3-1번지	2,400	80	양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변경	54	신포로	시가지 경관지구	사동 9-1번지, 사동 3-1번지	1,166	78	편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55	인중로	중심지 미관지구	사동 9-16번지, 사동 15-10번지	13,650	910	편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변경	55	인중로	시가지 경관지구	사동 9-16번지, 사동 15-10번지	2,892	193	편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기정	63	염곡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남동 526-4번지, 석남동 524번지	9,300	620	편측15	-	
변경	63	염곡로	시가지 경관지구	석남동 526-4번지, 석남동 524번지	5,009	334	편측15	-	
기정	64	서달로	중심지 미관지구	석남동 493번지, 석남동 488-1번지	9,300	620	편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변경	64	서달로	시가지 경관지구	석남동 493번지, 석남동 488-1번지	4,960	331	편측15	인고제169호 (1990.11.24.)	
기정	76	부흥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529-38번지, 부평동 529-159번지	3,000	100	양측15	-	
변경	76	부흥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529-38번지, 부평동 529-159번지	2,442	81	양측15	-	
기정	100	길주로	중심지 미관지구	산곡동 83-40번지, 산곡동 96-1번지	4,350	29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00	길주로	시가지 경관지구	산곡동 83-40번지, 산곡동 96-1번지	3,890	259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7	부평문화로	중심지 미관지구	부평동 542-28번지, 부평동 543-45번지	4,950	150 18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07	부평문화로	시가지 경관지구	부평동 542-28번지, 부평동 543-45번지	4,244	141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08	인중로	중심지 미관지구	송림동 4-190번지, 송림동 5-12번지	51,750	930 2,52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08	인중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4-190번지, 송림동 5-12번지	1,466	98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10	송현로	중심지 미관지구	송현동 72-129번지, 송현동 67-65번지	8,700	280 30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10	송현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현동 72-129번지, 송현동 114-46번지	4,026	268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폐지	110	송현로	일반 미관지구	송현동 67-66번지, 송현동 114-46번지	660	44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12	셋골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55-14번지, 송림동 55-1번지	4,800	160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12	셋골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55-14번지, 송림동 55-1번지	5,631	188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3	동산로	중심지 미관지구	송림동 67-38번지, 송림동 59-27번지	6,000	200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13	동산로	시가지 경관지구	송림동 67-38번지, 송림동 59-27번지	5,753	192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19	서해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생동 38-6번지, 신흥동3가 39-3번지	16,500	1,10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19	서해대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1가 34-10번지, 신흥동3가 39-3번지	9,762	651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21	인항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흥동3가 7-308번지, 신흥동3가 7-325번지	18,600	620	양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21	인항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3가 7-308번지, 신흥동3가 7-325번지	6,143	41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기정	132	매소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흥동3가 29-9번지, 용현동 627-410번지	6,000	400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변경	132	매소홀로	시가지 경관지구	신흥동3가 29-9번지, 용현동 627-410번지	8,028	535	편측15	인고제109호 (1999.9.9.)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개항로, 송림로	○ 위치: 용동 239-3번지, 송림동 31-61번지 → 경동 239-7번지 송림동 31-61번지 ○ 면적: 70,890㎡ → 52,677㎡ ○ 연장: 2,363m → 1,756m	○ 지구 경계와 도로 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2	수문통로, 우현로, 화도진로, 인증로, 경인로	○ 지구명: 화도진로, 우현로, 인증로, 경인로 → 수문통로, 우현로, 화도진로, 인증로, 경인로 ○ 위치: 송림동 234-12번지, 송의동 118-7번지 → 화평동 407-1 번지, 송의동 75-5번지 ○ 면적: 106,374㎡ → 86,941㎡ ○ 연장: 2,894m 4,190m → 2,898m ○ 폭원: 편측15 → 양측15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2)로 결정 ·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 ○ 지구 경계와 도로 경계 불부합지 정비. ○ 위치,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2	화도진로, 수문통로	○ 시가지경관지구 폐지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2)로 결정 ·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 지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 지구 폐지.
3	서해대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3,350㎡ → 12,241㎡ ○ 연장: 890m → 816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4	제물량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4,050㎡ → 2,881㎡ ○ 연장: 270m → 192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7	서해대로	○ 위치: 신흥동 7-79번지, 유동 2-67번지 → 신흥동3가 7-79번지, 송림동 203-14번지 ○ 면적: 22,800㎡ → 18,612㎡ ○ 연장: 605m 915m → 620m ○ 폭원: 편측15 → 양측15	○ 경관지구 위치(시·중점) 현행화. ○ 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0	참외전로, 경인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23,240㎡ → 107,455㎡ ○ 연장: 4,040m 4,176m → 3,582m ○ 폭원: 편측15 → 양측15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광장로, 부평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55,125㎡ → 47,781㎡ ○ 연장: 1,920m 1,755m → 1,593m ○ 폭원: 편측15 → 양측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4	대정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24,000㎡ → 23,525㎡ ○ 연장: 800m → 78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5	시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24,000㎡ → 21,268㎡ ○ 연장: 800m → 70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6	부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22,800㎡ → 19,180㎡ ○ 연장: 760m → 63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8	장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41,400㎡ → 35,680㎡ ○ 연장: 1,380m → 1,18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3	길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9,900㎡ → 11,328㎡ ○ 연장: 660m → 75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4	가정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0,950㎡ → 10,166㎡ ○ 연장: 365m → 33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5	열우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5,100㎡ → 4,745㎡ ○ 연장: 170m → 15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열우물로, 석정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3,200㎡ → 11,515㎡ ○ 연장: 440m → 384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7	경원대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23,550㎡ → 21,558㎡ ○ 연장: 760m 810m → 719m ○ 폭원: 편측15 → 양측15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8	원적으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위치: 산곡동 87-900번지, 산곡동 181-68번지 → 산곡동 87- 900번지, 부평동 38-184번지 ○ 면적: 4,800㎡ → 5,570㎡ ○ 연장: 320m → 186m ○ 폭원: 편측15 → 양측15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38)로 결정 ·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경관지구 위치(시·중점) 현행화.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38	원적으로	○ 시가지경관지구 폐지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38)로 결정 ·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 지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 지구 폐지.
39	수문통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위치: 송현동 68-15번지, 송현동 66-25번지 → 송현동 68- 15번지, 송현동 66-20번지 ○ 면적: 2,175㎡ → 2,032㎡ ○ 연장: 145m → 135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경관지구 위치(시·중점) 현행화.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41	마장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6,750㎡ → 6,241㎡ ○ 연장: 450m → 416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51	제물량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33,450㎡ → 33,397㎡ ○ 연장: 1,115m → 1,113m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54	신포로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2,400㎡ → 1,166㎡ ○ 연장: 80m → 78m ○ 폭원: 양측15 → 편측15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5	인중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3,650㎡ → 2,892㎡ ○ 연장: 910m → 19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63	염곡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9,300㎡ → 5,009㎡ ○ 연장: 620m → 33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64	서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9,300㎡ → 4,960㎡ ○ 연장: 620m → 33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76	부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3,000㎡ → 2,442㎡ ○ 연장: 100m → 8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00	길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4,350㎡ → 3,890㎡ ○ 연장: 290m → 25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07	부평문화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4,950㎡ → 4,244㎡ ○ 연장: 150m 180m → 141m ○ 폭원: 편측15 → 양측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08	인중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51,750㎡ → 1,466㎡ ○ 연장: 930m 2,520m → 9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0	송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위치: 송현동 72-129번지, 송현동 67-65번지 → 송현동 72-129번지, 송현동 114-46번지 ○ 면적: 8,700㎡ → 4,026㎡ ○ 연장: 280m 300m → 26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110)로 결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경관지구 위치(시·종점) 현행화. ○ 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10	송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경관지구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도면표시번호(110)로 결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하나의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경관지구 폐지.
112	셋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4,800㎡ → 5,631㎡ ○ 연장: 160m → 18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13	동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6,000㎡ → 5,753㎡ ○ 연장: 200m → 19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19	서해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위치: 신생동 38-6번지, 신흥동3가 39-3번지 → 신흥동1가 34-10번지, 신흥동3가 39-3번지 ○ 면적: 16,500㎡ → 9,762㎡ ○ 연장: 1,100m → 65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경관지구 위치(시·종점) 현행화.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21	인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18,600㎡ → 6,143㎡ ○ 연장: 620m → 410m ○ 폭원: 양측15 → 편측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면적, 폭원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132	매소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세분: 중심지미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면적: 6,000㎡ → 8,028㎡ ○ 연장: 400m → 53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구 개편(통·폐합)에 따른 정비. ○ 지구경계와 도로경계 불부합지 정비. ○ 면적을 현행화하고, 면적을 폭원으로 나누어 연장 변경.

나. 용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 지구	역사문화	중구 향동6가 1일원	470,878	-	-	2003.5.25. (인고제2003-96호)	
변경	1	신포 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중구 향동6가 1일원	470,878	-	-	2003.5.25. (인고제2003-96호)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신포 지구	○ 지구명 및 지구의 세분 변경 - 지구명: 미관지구 → 신포지구 - 지구의 세분: 역사문화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경관지구, 미관지구→경관지구)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부합하도록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의 12개 노선)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류25호선의 12개 노선, 사업명: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2단계:3~5공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 032-440-4197), 동구청(건설과, ☎ 032-770-6572), 미추홀구청(건설과, ☎ 032-880-4428), 서구청(도로과, ☎ 032-560-4522)에 비치 하였습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주안산단교차로)~서구 가정동(서인천IC) 일원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25호선 외 12개 노선)

- 도로: 광로2-25호선, 대로1-14호선, 대로2-29호선, 대로2-32호선, 대로3-19호선, 중로1-21호선, 중로1-26호선, 중로

1-43호선, 소로1-15호선, 소로1-22호선, 소로1-29호선,
소로1-42호선, 소로2-58호선

○ 명칭: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2단계: 3~5공구)

3.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439,719.3m²

○ 사업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25	50 (351~1506)	보조 간선도로	10,450	용현동 광3-4	가정동 587-1	일반 도로	-	인고 2020-178호 (2020.06.01.)	
시행	광로	2	25	50 (445~1473)	보조 간선도로	5,600	도화동 2	가정동 586	일반 도로	-	인고 2020-178호 (2020.06.01.)	
결정	대로	1	14	35-41	보조 간선도로	14,700	원창동 대2-38	장수동 광3-7	일반 도로	-	건고75 (1975.5.20.)	
시행	대로	1	14	35	보조 간선도로	628.3	가좌동 589-1	가좌동 292	일반 도로	-	건고75 (1975.5.20.)	
결정	대로	2	29	30	보조 간선도로	4,250	가좌동 대2-32	대1-14	일반 도로	-	건고 1975-75호 (1975.05.16.)	
시행	대로	2	29	30	보조 간선도로	439.98	가좌동 103	가좌동 169	일반 도로	-	건고 1975-75호 (1975.05.16.)	
결정	대로	2	32	30-33	주간선 도로	8,081	도화동 대2-4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22,32호 광장	건고1986-427호 (1986.09.29.)	
시행	대로	2	32	21~32	주간선 도로	540	가좌동 569-1	가좌동 284	일반 도로	-	건고1986-427호 (1986.09.29.)	
결정	대로	3	19	25	보조 간선도로	750	가좌동 대로2-35	중1-56	일반 도로	-	건고 1975-75호 (1975.05.16.)	
시행	대로	3	19	25	보조 간선도로	270.6	가좌동 156	가좌동 208	일반 도로	-	건고 1975-75호 (1975.05.16.)	
결정	중로	1	21	20	국지 도로	1,791	대2-32	십정 대1-12	일반 도로	-	인고1976-37호 (1976.03.27.)	
시행	중로	1	21	13.7	국지 도로	26	가좌동 551	가좌동 551	일반 도로	-	인고1976-37호 (1976.03.27.)	
결정	중로	1	26	20	국지 도로	1,330	대2-35호	가좌동 중1-69호	일반 도로	-	건고 75호 (1975.05.20.)	
시행	중로	1	26	20	국지 도로	380	가 좌 동 563-2	가좌동 274-12	일반 도로	-	건고 75호 (1975.05.20.)	
결정	중로	1	43	20	국지 도로	690	광2-25	중1-27	일반 도로	-	건고1971-546호 (1971.09.13.)	
시행	중로	1	43	20	국지 도로	35	광2-25	석남동 618	일반 도로	-	건고1971-546호 (1971.09.13.)	
결정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260	가좌 소1-14	광2-25	일반 도로	-	-	
시행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22	가좌동 201	가좌동 201	일반 도로	-	-	
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489	가좌 소1-18	광2-25	일반 도로	-	-	
시행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33.6	가좌 소1-18	광2-25	일반 도로	-	-	
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315	가좌 중1-56	광2-25	일반 도로	-	-	
시행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43.7	가좌 중1-56	광2-25	일반 도로	-	-	

결정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397	가좌 소2-35	광2-25	일반 도로	-	-	
시행	소로	1	42	10	국지 도로	47	가좌 소2-35	광2-25	일반 도로	-	-	
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65	광2-25	석남 중1-57	일반 도로	-	-	
시행	소로	2	58	8	국지 도로	5.6	광2-25	석남동 635	일반 도로	-	-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2단계:3~5공구)” 와 관련된 일체의 도시계획도로(광로2류25호선, 대로1-14호선, 대로2-29호선, 대로2-32호선, 대로3-19호선, 중로1-21호선, 중로1-26호선, 중로1-43호선, 소로1-15호선, 소로1-22호선, 소로1-29호선, 소로1-42호선, 소로2-58호선)

붙임 용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용지 조서

○ 시설명 : 광로2-25호선의 12개 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주 소	성명
계				93필지	439,719.3					
1	미추홀구 도화동	2	도	14,027.8	10,770.0	인천광역시	공			
2	미추홀구 주안동	1416	도	11,747.4	10,792.0	인천광역시	공			
3	동구송림동	324	도	3,727.5	3,703.0	인천광역시	공			
4	서구가좌동	606-18	도	3,790.9	3,768.0	인천광역시	공			
5	서구가좌동	180-91	도	2,717.0	97.0	국토교통부	국			
6	서구가좌동	546	도	2,489.3	1,033.0	인천광역시서구	공			
7	서구가좌동	546-1	도	4,602.7	4,593.0	국토교통부	국			
8	서구가좌동	180-55	체	430.0	408.0	인천광역시중구 사동7	주식회사 영진공사	지상권 근저당권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	한국외환 은행
9	서구가좌동	547	도	223.1	223.1	인천광역시서구	공			
10	서구가좌동	551	도	83,321.9	14,677.0	인천광역시	공			
11	서구가좌동	549	도	4,753.1	3,423.0	인천광역시서구	공			
12	서구가좌동	177-2	도	1,478.0	1,478.0	인천광역시서구	공			
13	서구가좌동	177-1	도	35,823.0	35,823.0	인천광역시서구	공			
14	서구가좌동	177-3	도	1,481.0	1,481.0	인천광역시서구	공			
15	서구가좌동	297-2	도	5,221.2	5,221.2	인천광역시서구	공			
16	서구가좌동	550	잡	5,646.6	1,996.0	인천광역시	공			
17	서구가좌동	569-1	도	17,597.0	8,559.0	인천광역시서구	공			
18	서구가좌동	297-1	잡	417.0	417.0	인천광역시	공			
19	서구가좌동	297-5	잡	3,907.0	2,187.0	인천광역시	공			
20	서구가좌동	553-1	잡	4,579.2	4,579.2	인천광역시	공			
21	서구가좌동	589-1	도	48,162.6	10,783.0	인천광역시	공			
22	서구가좌동	177	도	38,879.0	12,317.0	인천광역시서구	공			
23	서구가좌동	565	도	6,808.3	6,808.3	인천광역시서구	공			
24	서구가좌동	558-1	도	296.2	180.0	인천광역시서구	공			
25	서구가좌동	556-17	도	235.0	30.0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 도로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주 소	성명
26	서구가좌동	558	도	2,238.0	380.0	인천광역시서구	공			
27	서구가좌동	274-11	도	922.0	922.0	인천광역시서구	공			
28	서구가좌동	274-13	도	256.0	256.0	인천광역시서구	공			
29	서구가좌동	274-14	도	4,501.0	4,501.0	인천광역시서구	공			
30	서구가좌동	274-20	도	686.0	686.0	인천광역시	공			
31	서구가좌동	563-2	도	6,494.5	3,693.0	인천광역시	공			
32	서구가좌동	563-1	도	106.4	106.4	인천광역시서구	공			
33	서구가좌동	110	도	34,455.2	34,455.2	인천광역시서구	공			
34	서구가좌동	559	도	15,043.7	15,043.7	인천광역시서구	공			
35	서구가좌동	216	도	7,580.0	6,450.0	인천광역시서구	공			
36	서구가좌동	274-12	도	2,724.0	1,636.0	인천광역시서구	공			
37	서구가좌동	279	도	5,142.6	1,582.0	인천광역시서구	공			
38	서구가좌동	571-1	도	640.3	640.3	인천광역시서구	공			
39	서구가좌동	571-9	도	940.5	133.0	인천광역시서구	공			
40	서구가좌동	571-11	도	451.2	451.2	인천광역시서구	공			
41	서구가좌동	568	도	2,094.9	2,094.9	인천광역시서구	공			
42	서구가좌동	567	잡	12,288.1	12,288.1	인천광역시	공			
43	서구가좌동	566	잡	11,524.6	11,524.6	인천광역시	공			
44	서구가좌동	556-21	대	13.8	13.8	기획재정부	국			
45	서구가좌동	556-19	도	30.1	30.1	국토교통부	국			
46	서구가좌동	284	도	10,478.3	1,080.0	인천광역시	공			
47	서구가좌동	292	도	31,176.4	1,814.0	인천광역시서구	공			
48	서구가좌동	555	잡	6,264.5	6,264.5	인천광역시	공			
49	서구가좌동	554-1	도	1,302.8	1,302.8	인천광역시서구	공			
50	서구가좌동	554-2	잡	1,214.9	1,214.9	인천광역시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주 소	성명
51	서구가좌동	553-2	잡	195.0	195.0	인천광역시서구	공			
52	서구가좌동	552-22	잡	194.4	188.0	인천광역시서구	공			
53	서구가좌동	297-4	잡	220.0	220.0	인천광역시	공			
54	서구가좌동	297-3	잡	595.0	595.0	인천광역시	공			
55	서구가좌동	154	도	9,470.1	18.0	인천광역시서구	공			
56	서구가좌동	109-1	도	4,894.2	4,126.0	인천광역시서구	공			
57	서구가좌동	168	도	7,597.5	7,597.5	인천광역시서구	공			
58	서구가좌동	109	도	6,953.6	6,953.6	인천광역시서구	공			
59	서구가좌동	156	도	8,200.1	3,825.0	인천광역시	공			
60	서구가좌동	141	도	11,737.4	610.0	인천광역시서구	공			
61	서구가좌동	208	도	10,291.1	3,043.0	인천광역시서구	공			
62	서구가좌동	201	도	5,996.7	574.0	인천광역시서구	공			
63	서구가좌동	103	도	11,168.8	3,997.0	인천광역시서구	공			
64	서구가좌동	169	도	6,481.7	2,673.0	인천광역시서구	공			
65	서구가좌동	169-2	도	256.1	256.1	인천광역시	공			
66	서구가좌동	169-1	잡	117.7	117.7	인천광역시서구	공			
67	서구석남동	637	도	3,473.7	3,435.0	인천광역시서구	공			
68	서구석남동	622	도	32,408.6	3,904.0	인천광역시서구	공			
69	서구석남동	600	도	78,012.5	77,918.5	인천광역시서구	공			
70	서구석남동	635	도	14,561.4	432.0	인천광역시서구	공			
71	서구석남동	618	도	20,323.1	1,422.0	인천광역시	공			
72	서구가좌동	597	도	11,947.2	100.0	인천광역시	공			
73	서구가좌동	603	도	11,367.1	100.0	인천광역시서구	공			
74	서구석남동	574	도	11,829.9	100.0	인천광역시	공			
75	서구석남동	595	도	1,820.3	100.0	인천광역시서구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 소	성명	권리 내용	주 소	성명
76	서구가정동	581	도	1,499.9	1,499.9	인천광역시	공			
77	서구가정동	587	도	4,678.1	4,678.1	인천광역시	공			
78	서구가정동	591	도	1,463.8	1,463.8	인천광역시	공			
79	서구가정동	587-1	도	35,714.9	35,714.9	인천광역시	공			
80	서구가정동	591-1	도	7,546.7	7,546.7	인천광역시	공			
81	서구가정동	581-1	도	2,781.4	2,781.4	인천광역시	공			
82	서구가정동	583	도	4,447.9	4,447.9	인천광역시서구	공			
83	서구가정동	571-1	도	42.0	42.0	인천광역시	공			
84	서구가정동	571	도	43.2	43.2	인천광역시	공			
85	서구가정동	560-8	대	390.1	390.1	인천광역시	공			
86	서구가정동	560-7	도	409.1	409.1	인천광역시	공			
87	서구가정동	560-56	대	390.1	390.1	인천광역시	공			
88	서구가정동	592-1	도	57.5	57.5	인천광역시	공			
89	서구가정동	555-23	대	5.0	5.0	인천광역시	공			
90	서구가정동	555-4	도	1,069.9	1,069.9	인천광역시	공			
91	서구가정동	590-1	도	174.7	165.0	인천광역시	공			
92	서구가정동	588-1	도	14.3	12.0	인천광역시	공			
93	서구가정동	587-3	도	27,643.4	2,592.0	인천광역시	공			

지장물 조서

○ 시설명 : 광로2-2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구 가좌동	570-34	컨테이너	철재	㎡	13.16	나래금속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34
2	서구 가좌동	564-24	컨테이너	금속	㎡	18.00	동화플 랜트	인천시 서구 가좌동 564-24
3	서구 가좌동	216	자전거보관소	철재, 플라스틱 H:2.0	개소	2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자전거거치대	철재 H:0.5	개소	2		
4	서구 가좌동	109-1	자전거보관소	철재, 플라스틱 H:2.0	개소	2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자전거거치대	철재 H:0.5	개소	2		
5	서구 가좌동	108-49	물타리	목재	m	6	세화빌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10-49
6	서구 석남동	600	자전거보관소	철재, 플라스틱 H:2.0	개소	9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자전거거치대	철재 H:0.5	개소	11		
7	서구 석남동	600	자전거보관소	철재, 플라스틱 L:3.0, W:2.0	개소	1	서구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자전거거치대	철재, 플라스틱 L:3.0, W:2.0	개소	1		
8	서구 석남동	618	자전거보관소	철재	개소	4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5호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4-10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 명칭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공원 총면적 : 1,553,036㎡
- 사업면적 : (기정) 214,896㎡ (변경) 201,718㎡
- 사업내용(규모) :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 건립, 산림복원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22. 10. 30.

○ (변경) 실시계획인가 이후 ~ 2023.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토지조서(기정)

NO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8,713	214,896				
1	부평구 부평동 15-4	산 15-4	임	992	908	인천광역시 부평구			
2	부평구 부평동 15-5	산 15-5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3	부평구 부평동 15-6	산 15-6	임	298	298	인천광역시 부평구			
4	부평구 부평동 15-7	산 15-7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5	부평구 부평동 43-2	산 43-2	임	3,682	3,682	인천광역시외1			
6	부평구 부평동 43-6	산 43-6	임	1,612	1,612	인천광역시외1			
7	부평구 부평동 44-1	산 44-1	임	30,121	30,121	인천광역시외1			
8	부평구 부평동 44-30	산 44-30	임	2,718	2,718	인천광역시외1			
9	부평구 부평동 45-1	산 45-1	임	31,754	31,754	인천광역시			
10	부평구 부평동 45-4	산 45-4	임	264	264	인천광역시			
11	부평구 부평동 49-3	산 49-3	임	8,590	730	산림청			
12	부평구 부평동 49-29	산 49-29	임	275	275	인천광역시			
13	부평구 부평동 49-4	산 49-4	임	913	142	산림청			
14	부평구 부평동 49-30	산 49-30	임	797	797	인천광역시			
15	부평구 부평동 49-19	산 49-19	임	4,264	74	인천광역시			

16	부평구 부평동	산 52-1	임	10,728	10,728	산림청			
17	부평구 부평동	산 52-33	임	4,091	4,091	인천광역시			
18	부평구 부평동	산 52-31	임	57	57	인천광역시			
19	부평구 부평동	산 52-5	임	1,587	1,587	인천광역시 부평구			
20	부평구 부평동	산 52-6	임	2,427	2,427	산림청			
21	부평구 부평동	산 52-34	임	2,234	2,234	인천광역시			
22	부평구 부평동	산 52-7	임	1,190	1,190	인천광역시 부평구			
23	부평구 부평동	산 52-8	임	34,920	46	산림청			
24	부평구 부평동	산 52-15	임	856	856	인천광역시			
25	부평구 부평동	산 52-16	임	5,358	5,358	산림청			
26	부평구 부평동	산 52-26	임	22,671	21,740	산림청			
27	부평구 부평동	산 52-27	임	723	485	산림청			
28	부평구 부평동	산 52-29	임	581	581	인천광역시			
29	부평구 부평동	산 52-30	임	2,791	2,791	인천광역시			
30	부평구 부평동	산 52-32	임	348	348	인천광역시			
31	부평구 부평동	산 53-1	임	5,058	5,058	산림청			
32	부평구 부평동	산 53-5	임	22,898	22,898	인천광역시			

33	부평구 부평동	산 53-2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34	부평구 부평동	산 53-3	임	595	595	인천광역시 부평구			
35	부평구 부평동	산 54-4	임	2,876	1,810	인천광역시			
36	부평구 부평동	산 54-7	임	198	198	인천광역시 부평구			
37	부평구 부평동	산 54-8	임	298	298	인천광역시 부평구			
38	부평구 부평동	산 54-9	임	198	198	산림청			
39	부평구 부평동	산 54-34	임	17,493	16,730	산림청			
40	부평구 부평동	산 54-37	임	20,192	20,192	인천광역시			
41	부평구 부평동	산 54-30	임	3,349	3,349	인천광역시			
42	부평구 부평동	산 54-31	임	12,520	12,520	인천광역시			
43	부평구 부평동	산 54-11	임	1,289	186	인천광역시 부평구			
44	부평구 부평동	산 54-28	임	1,947	10	산림청			
45	부평구 부평동	산 54-35	임	22	22	인천광역시			
46	부평구 부평동	산 54-36	임	1	1	인천광역시			
47	부평구 부평동	산 54-32	임	18	18	인천광역시			
48	부평구 부평동	산 54-33	임	2,622	2,622	인천광역시			

토지조서(변경)

NO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42,714	201,718				
1	부평구 부평동	산 15-4	임	992	908	인천광역시 부평구			
2	부평구 부평동	산 15-5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3	부평구 부평동	산 15-6	임	298	298	인천광역시 부평구			
4	부평구 부평동	산 15-7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5	부평구 부평동	산 43-2	임	3,682	3,682	인천광역시외1			
6	부평구 부평동	산 43-6	임	1,612	1,612	인천광역시외1			
7	부평구 부평동	산 44-1	임	30,121	30,121	인천광역시외1			
8	부평구 부평동	산 44-30	임	2,718	2,718	인천광역시외1			
9	부평구 부평동	산 45-1	임	31,754	31,754	인천광역시			
10	부평구 부평동	산 45-4	임	264	264	인천광역시			
11	부평구 부평동	산 52-1	임	10,728	10,728	산림청			
12	부평구 부평동	산 52-33	임	4,091	4,091	인천광역시			
13	부평구 부평동	산 52-31	임	57	57	인천광역시			

14	부평구 부평동	산 52-5	임	1,587	1,587	인천광역시 부평구			
15	부평구 부평동	산 52-6	임	2,427	2,427	산림청			
16	부평구 부평동	산 52-34	임	2,234	2,234	인천광역시			
17	부평구 부평동	산 52-7	임	1,190	1,190	인천광역시 부평구			
18	부평구 부평동	산 52-8	임	34,920	46	산림청			
19	부평구 부평동	산 52-15	임	856	856	인천광역시			
20	부평구 부평동	산 52-26	임	22,671	21,740	산림청			
21	부평구 부평동	산 52-27	임	723	485	산림청			
22	부평구 부평동	산 52-29	임	581	581	인천광역시			
23	부평구 부평동	산 53-1	임	5,058	5,058	산림청			
24	부평구 부평동	산 53-5	임	22,898	22,898	인천광역시			
25	부평구 부평동	산 53-2	임	99	99	인천광역시 부평구			
26	부평구 부평동	산 53-3	임	595	595	인천광역시 부평구			
27	부평구 부평동	산 54-4	임	2,876	1,810	인천광역시			
28	부평구 부평동	산 54-7	임	198	198	인천광역시 부평구			
29	부평구 부평동	산 54-8	임	298	298	인천광역시 부평구			

30	부평구 부평역	산 54-9	임	198	198	산림청			
31	부평구 부평역	산 54-34	임	17,493	16,730	산림청			
32	부평구 부평역	산 54-37	임	20,192	20,192	인천광역시			
33	부평구 부평역	산 54-30	임	3,349	3,349	인천광역시			
34	부평구 부평역	산 54-31	임	12,520	12,520	인천광역시			
35	부평구 부평역	산 54-11	임	1,289	186	인천광역시 부평구			
36	부평구 부평역	산 54-28	임	1,947	10	산림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6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9호(2021.10.1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10.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에 대한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315-37(동춘동 752-4번지) 일원
- 면적: 407,913㎡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행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연수동)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8. 11. 24. ~ 환지처분일까지(2023. 12. 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63)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생략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동춘1 도시개발구역 동춘1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407,913	-	407,9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12호 (2006.11.27)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07,913	-	407,91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06	-	141,606	34.9	
	제2종일반주거지역	52,053	-	52,053	12.7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217	-	189,217	46.3	
	준주거지역	25,037	-	25,037	6.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6	5,642	100,830.8	8	2,195	34,825.0	14	3,225	63,989.8	4	222	2,016.0
광로	1	161	8,901.0	-	-	-	1	161	8,901.0	-	-	-
대로	2	1,254	40,426.0	1	263	6,150.0	1	991	34,276.0	-	-	-
중로	3	1,327	25,519.0	1	656	15,875.0	1	535	7,971.0	1	136	1,673.0
소로	20	2,900	25,984.8	6	1,276	12,800.0	11	1,538	12,841.8	3	86	343.0

주)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내의 면적 및 연장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도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3	50~90	주간선 도로	2,950 (161)	청학동 광3-6	동춘동 광3-5	일반 도로		인고 제1386호 (1988. 9. 23)	
기정	대로	1	9	35~38	주간선 도로	5,025 (611)	광2-8	65호광장	일반 도로		경고 제160호 (1976. 7. 8)	
기정	대로	2	10	30~36	주간선 도로	1,197 (991)	송도고교	능해로	일반 도로		건고 제2706호 (1966. 9. 2)	
기정	중로	1	361	23~26	집산 도로	656	대1-9	대2-10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	1,047	대2-14	대1-9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구역 외
기정	중로	2	651	15	집산 도로	684	광2-3	광3-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중로	3	400	12	국지 도로	136	대2-10	중2-651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4	대2-10	중1-361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42	소1-1	소1-1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3	10	특수 도로	32	대1-9	소1-2	보행자 전용도 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9	소1-2	소1-1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732	중2-651	중2-651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	대2-10	동춘동 726-2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5	9	국지 도로	129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52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78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05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1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7	중2-651	소2-12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8	중2-651	소1-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2	9	국지 도로	264	소1-5	소2-5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3	소1-5	소2-9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60	소1-5	소2-9	일반 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2	15	8	특수 도로	11	중1-361	동춘동 산4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3	1	4	특수 도로	32	대1-9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3	2	4	특수 도로	21	중1-361	소1-2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소로	3	4	4	특수 도로	33	대2-10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70호 (2008.11.24)	

주) ()는 사업구역 내·외 연장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560	-	4,560		
기정	1	주차장	동춘동 767번지 일원	1,000	-	1,000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2	주차장	동춘동 715-1번지 일원	963	-	963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3	주차장	동춘동 710-1번지 일원	1,497	-	1,497	인고 제270호 (2008.11.24)	저류시설2 지하부 중복결정
기정	4	주차장	동춘동 710-5번지 일원	1,100	-	1,100	인고 제439호 (2021.10.18.)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2,569		22,569		
기정	1	-	근린공원	동춘동 738-10번지 일원	10,157	-	10,157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2	-	근린공원	동춘동 559-33번지 일원	10,175	-	10,175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1	-	어린이공원	동춘동 716-3번지 일원	2,237	-	2,237	인고 제270호 (2008.11.24)	

나)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40,911	-	40,91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74-6번지 일원	1,896	-	1,896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69-24번지 일원	1,729	-	1,729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28-7번지 일원	1,740	-	1,740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1,638	-	11,638	인고 제270호 (2008.11.24)	저류시설1 지하부 중복결정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8-2번지 일원	1,913	-	1,913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7-14번지 일원	3,946	-	3,946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6-4번지 일원	7,149	-	7,149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동춘동 710-1번지 일원	222	-	222	인고 제270호 (2008.11.24)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10,678	-	10,678	인고 제270호 (2008.11.24)	

3) 유통공급설비

가)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가스공급설비	동춘동 717-29번지 일원	24	-	24	인고 제244호 (2018.10.15)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학 교	초등학교	동춘동 752-3번지 일원	10,900	-	10,900	인고 제270호 (2008.11.24)	

5) 방재시설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2,497	-	2,497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9-9번지 일원	1,000	-	1,000	인고 제270호 (2008.11.24)	완충녹지4 지하부 중복결정
기정	2	우수지	저류시설	동춘동 710-1번지 일원	1,497	-	1,497	인고 제270호 (2008.11.24)	주차장3 지하부 중복결정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	하수도	옴프장	동춘동 710-1번지 일원	808	-	808	인고 제244호 (2018.10.15)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최소 획지구도	비 고
단독주택용지	250㎡	
근린생활시설용지	30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C-1	1	1,243.7	1	905.7			
			2	338.0			
C-1	2	3,510.1	1	410.0			
			2	511.8			
			3	2,588.3			
C-1	3	2,293.9	1	403.3			
주차장1(G)			2	890.6			
			3	1,000.0			
C-1	4	3,071.0	1	447.9			
			2	687.5			
			3	956.8			
			4	978.8			
C-1	5	504.6	1	504.6			
C-1			6	1,042.4	1	342.6	
					2	399.8	
			3	300.0			
B-1	7	75,933.7	1	51,647.7			
학교1(D)			2	10,900.0			
문화 및 집회(E)			3	1,500			
근린공원1			5	10,157.0			
완충녹지2			6	1,729.0			
B-2	8	15,337.0	1	13,441.0			
완충녹지1			2	1,896.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B-3	9	30,848.2	1	30,848.2	
B-1	10	73,463.7	1	60,085.7	
완충녹지4			2	11,638.0	(유수지 1 1,000.0)
완충녹지3			3	1,740.0	
경관녹지1	11	10,702.0	1	10,678	
가스공급1			2	24.0	
C-2	12	5,539.4	1	300.0	
			2	465.8	
			3	386.5	
			4	350.0	
			5	383.6	
			6	343.3	
			7	447.0	
			8	364.0	
			9	350.0	
-			10	236.2	환지도로
완충녹지5			11	1,913.0	
C-2	13	3,793.0	1	532.6	
			2	311.9	
			3	311.9	
			4	286.2	
			5	286.2	
			6	409.8	
			7	362.4	
			8	504.0	
			9	308.1	
			10	389.4	
-			11	90.5	환지도로
완충녹지7	14	7,149.0	1	7,149.0	
A	15	4,167.3	1	406.1	
			2	395.0	
			3	351.1	
			4	351.1	
			5	455.7	
			6	397.0	
			7	338.3	
			8	373.5	
			9	251.4	
			10	250.0	
			11	598.1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16	2,663.4	1	316.8	
			2	316.8	
			3	316.8	
			4	250.0	
			5	250.0	
			6	250.0	
			주차장2		7
어린이공원 1	17	2,237.0	1	2,237	
A	18	9,062.3	1	514.5	
			3	419.8	
			4	409.0	
			5	381.4	
			6	360.8	
			7	283.4	
			7-1	283.5	
			8	422.8	
			9	380.5	
			10	250.0	
			11	250.0	
			12	260.0	
			13	259.6	
			14	320.0	
			15	321.0	
			완충녹지6		16
A	19	2,831.9	1	398.6	
			2	250.0	
			3	366.4	
			4	340.0	
			5	370.0	
			6	383.9	
			7	323.4	
			8	399.6	
A	20	2,743.3	1	423.3	
			2	433.0	
			3	485.8	
			4	310.0	
			5	308.7	
			6	301.6	
			7	480.9	
A	21	3,390.7	1	250.0	
			2	296.2	
			3	296.2	
			4	296.2	
			5	296.2	
			6	331.5	
			7	304.1	
			8	304.1	
			9	304.1	
			10	356.0	
			11	356.1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22	3,480.8	1	266.2	
			2	266.2	
			3	433.7	
			4	323.3	
			5	323.4	
			6	303.3	
			7	385.7	
			8	392.1	
			9	357.8	
			10	429.1	
A	23	4,091.1	1	250.0	
			2	458.3	
			3	290.0	
			4	290.0	
			5	270.8	
			6	427.4	
			7	424.0	
			8	301.2	
			9	301.2	
			10	250.0	
			11	250.0	
			12	277.1	
			13	301.1	
A	24	3,765.8	1	250.0	
			2	250.0	
			3	250.0	
			4	252.7	
			5	265.0	
			6	276.1	
			7	251.9	
			8	252.2	
			9	262.2	
			10	293.9	
			11	368.1	
			12	270.7	
			13	261.3	
			14	261.7	
A	25	4,697.3	1	339.2	
			2	318.9	
			3	263.6	
			4	434.9	
			6	267.6	
			7	287.7	
			8	337.9	
			9	479.3	
			10	332.0	
			11	383.7	
			12	389.8	
			13	362.7	
			14	250.0	
			15	250.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26	5,250.8	1	361.8	
			2	362.4	
			3	362.3	
			4	362.3	
			5	300.0	
			6	250.3	
			7	250.0	
			8	391.9	
			9	433.6	
			10	285.2	
			11	330.6	
			12	258.0	
			13	325.6	
			14	325.6	
			15	325.6	
			16	325.6	
C-2	27	3,675.5	1	332.6	
			2	390.8	
			3	299.4	
			4	299.4	
			5	299.4	
			6	423.7	
			7	353.9	
			8	250.0	
			9	250.0	
			10	385.0	
			11	391.3	
A	28	2,619.1	1	274.1	
			2	275.6	
			3	334.2	
			4	501.2	
			5	423.2	
			6	394.4	
			7	416.4	
A	29	2,125.2	1	357.8	
			2	357.9	
			3	357.8	
			4	400.9	
			5	400.8	
			6	250.0	

도면 표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A	30	2,047.0	1	323.2	
			2	338.8	
			3	368.4	
			4	338.9	
			5	338.8	
			6	338.9	
근린공원2	31	13,802.0	1	10,175.0	
주차장4			5	1,100.0	
주차장3			2	1,497.0	(유수지 2 1,497)
완충녹지8			3	222.0	
오수펌프장1			4	808.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없음)

가) 단독주택용지(A)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	용 도	허 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12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 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하고 주로 YR계열, Y계열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고 조화롭게 연출	
		건 축 선	-	

나) 공동주택용지(B-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 7가구 16% 이하 (아파트 13%이하) • 10가구 13% 이하	
		용 적 률	• 220% 이하	
		높 이	• 30층 이하	
		가구당세대수	• 7가구 1,023세대, 10가구 1,180세대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변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제산으로의 산지 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타워형 배치를 위주로 하며, 벽식의 타워형 지양 • 저층부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 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다) 공동주택용지(B-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2	B-2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평균층수 18층 이하	
		가 구 당 세 대 수	• 8가구 281세대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 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 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라) 공동주택용지(B-3)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3	B-3	용 도	허 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15% 이하	
		용 적 륜	• 220% 이하	
		높 이	• 26층 이하	
		가 구 당 세 대 수	• 9가구 625세대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하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소음 저감을 위해 직각배치 • 아파트 1동의 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및 심리적 중압감 등을 고려, 판상형의 경우 최대길이를 50m 이내로 함 • 동별 차별층수를 적용하여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 동별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인천대교에서 송도, 미추홀길 등 주변 주요 조망지점에서 청량산, 봉재산으로의 산지경관 조망이 확보되도록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주동은 가급적 타워형 배치 권장 • 저층부는 가급적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 • 옥탑부는 모던하고 세련된 형태로 디자인하되 주변 자연경관 요소를 고려하여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여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특화계획 수립 • 입면부는 개성 있는 외관형성을 위한 입면 차별화로 변화감 있는 단지형성을 유도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7:2:1로 적용 • 주조색은 밝으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하며, 주변과 조화 되는 색채를 선택 • 강조색은 블록별로 차별화할 수 있으며, GY, G, YR, Y, PB, P 계열의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는 4-7 이하, 채도는 4이하 범위의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 			
건 축 선	-			

마) 근린생활시설용지(C-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1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가구번호 1에 한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
			불 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있게 처리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로 2-10호선 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바) 근린생활시설용지(C-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2	C-2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단, 2층 이상 건축 시 허용하되 최상층 1개 층에 한해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옥외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 판매사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획지당 세대수	• 1세대(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 건축물의 전면방향을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입면부는 문양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미적 기능을 확보하고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통일감 있게 처리 • 보행자도로와 접한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가능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 보행자와 장애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 •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사) 학교시설용지(D)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D	용 도	허 용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륜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아) 문화시설용지(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E	용 도	허 용	• 문화 및 집회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 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자) 주차장용지(G)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	G-1	용 도	허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하며, 2층이상은 주차장용도에 한함)
			불 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G	G-2	용 도
불 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건 축 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단독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1획지당 최소 2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B-1	공동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소로 1-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 대로 2-10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공공보행 통 로	• 근린공원1 및 초등학교 북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B-2	공동주택 용 지 (이주대책)	대지내 조 경	• 대로 1-9호선 완충녹지변으로 5m의 대지내 조경공간 확보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B-3	공동주택 용 지	대지내 공 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공공 보행 통로	기정	• 공동주택부지 내 획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 획지별로 2m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 (①획지 2m, ②획지 2m)	
			변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의 예외) • 대로 1-9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 2-10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 1-361호선변으로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C-2	근린생활 시설용지	대지내 공 지	-	
		대지내 조 경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D	학교용지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E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주차장법,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G	주차장용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77호

도시관리계획(원적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적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원적산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7),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 사업소(032-440-5876)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원적산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71-12 일원
3. 면 적 : 215,172㎡
4. 도시계획시설(원적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도시계획시설(원적산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71-12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215,172	49,950	6	398.4	426.6	34	215,172	49,950	6	398.4	426.6	34			
공 원 시 설	시설계	49,950	49,950	-	-	-	-	49,950	49,950	-	-	-	-	-	
	기 반 시 설	소계	18,989	18,989	-	-	-	-	18,989	18,989	-	-	-	-	-
		도로	14,943	14,943	-	-	-	-	14,943	14,943	-	-	-	-	-
		광장	4,046	4,016	-	-	-	-	4,046	4,016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	
	휴양시설	10,330.5	10,330.5	-	-	-	15	10,330.5	10,330.5	-	-	-	15		
	유희시설	767	767	-	-	-	9	767	767	-	-	-	9		
	운동시설	12,324	12,324	-	-	-	10	12,324	12,324	-	-	-	10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1 농구장 → 다목적운동장2	
	교양시설	2,185	2,185	1	30	30	-	2,185	2,185	1	30	30	-		
	편익시설	4,749.5	4,749.5	4	192.58	230.08	-	4,749.5	4,749.5	4	192.58	230.08	-		
관리시설	605	605	2	175.82	166.52	-	605	605	2	175.82	166.52	-			
녹지 및 기타	165,222	-	-	-	-	-	165,222	-	-	-	-	-	-	녹지율: 76.79%	
시설율(% (법정 40%이하)	$(49,950\text{㎡} \div 215,172\text{㎡}) \times 100 = 23.21\%$						$(49,950\text{㎡} \div 215,172\text{㎡}) \times 100 = 23.21\%$								
건폐율(% (법정 15%이하)	$(398.4\text{㎡} \div 215,172\text{㎡}) \times 100 = 0.19\%$						$(398.4\text{㎡} \div 215,172\text{㎡}) \times 100 = 0.19\%$								

나. 시설조서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³)		공 작 물 (기)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³)		공 작 물 (기)	
					바 닥 면 적	연 면 적					바 닥 면 적			연 면 적
합 계			215,172	49,950	398.4	426.6	34		215,172	49,950	398.4	426.6	34	
도 로 및 광 장	소 계	-	18,989	18,989	-	-	-	-	18,989	18,989	-	-	-	-
	도로	-	14,943	14,943	-	-	-	-	14,943	14,943	-	-	-	-
	광장	가	4,046	4,046	-	-	-	가	4,046	4,046	-	-	-	-
	광장1	가-1	(308)	(308)	-	-	-	가-1	(308)	(308)	-	-	-	-
	광장2	가-2	(516)	(516)	-	-	-	가-2	(516)	(516)	-	-	-	-
	광장3	가-3	(45)	(45)	-	-	-	가-3	(45)	(45)	-	-	-	-
	광장4	가-4	(137)	(137)	-	-	-	가-4	(137)	(137)	-	-	-	-
	광장5	가-5	(50)	(50)	-	-	-	가-5	(50)	(50)	-	-	-	-
	광장6	가-6	(50)	(50)	-	-	-	가-6	(50)	(50)	-	-	-	-
	광장7	가-7	(100)	(100)	-	-	-	가-7	(100)	(100)	-	-	-	-
	광장8	가-8	(100)	(100)	-	-	-	가-8	(100)	(100)	-	-	-	-
	광장9	가-9	(16)	(16)	-	-	-	가-9	(16)	(16)	-	-	-	-
	광장10	가-10	(20)	(20)	-	-	-	가-10	(20)	(20)	-	-	-	-
	광장11	가-11	(49)	(49)	-	-	-	가-11	(49)	(49)	-	-	-	-
	광장12	가-12	(46)	(46)	-	-	-	가-12	(46)	(46)	-	-	-	-
	광장13	가-13	(20)	(20)	-	-	-	가-13	(20)	(20)	-	-	-	-
광장14	가-14	(88)	(88)	-	-	-	가-14	(88)	(88)	-	-	-	-	
광장15	가-15	(2,403)	(2,403)	-	-	-	가-15	(2,403)	(2,403)	-	-	-	-	
광장16	가-16	(98)	(98)	-	-	-	가-16	(98)	(98)	-	-	-	-	
휴 양 시 설	소 계	-	10,330.5	10,330.5	-	-	-	-	10,330.5	10,330.5	-	-	-	-
	쉼터	나	2,507.5	2,507.5	-	-	-	나	2,507.5	2,507.5	-	-	-	-
	쉼터1	나-1	(439.5)	(439.5)	-	-	-	나-1	(439.5)	(439.5)	-	-	-	-
	쉼터2	나-2	(830)	(830)	-	-	-	나-2	(830)	(830)	-	-	-	-
	쉼터3	나-3	(240)	(240)	-	-	-	나-3	(240)	(240)	-	-	-	-
	쉼터4	나-4	(201)	(201)	-	-	-	나-4	(201)	(201)	-	-	-	-
	쉼터5	나-5	(584)	(584)	-	-	-	나-5	(584)	(584)	-	-	-	-
	쉼터6	나-6	(113)	(113)	-	-	-	나-6	(113)	(113)	-	-	-	-
쉼터7	나-7	(100)	(100)	-	-	-	나-7	(100)	(100)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²)		공 작 물 (기)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²)		공 작 물 (기)	
					바 닥 면 적	연 면 적					바 닥 면 적	연 면 적		
휴 양 시 설	야유회장	다	7,823	7,823	-	-	-	다	7,823	7,823	-	-	-	-
	야유회장1	다-1	(127)	(127)	-	-	-	다-1	(127)	(127)	-	-	-	-
	야유회장2	다-2	(247)	(247)	-	-	-	다-2	(247)	(247)	-	-	-	-
	야유회장3	다-3	(703)	(703)	-	-	-	다-3	(703)	(703)	-	-	-	-
	야유회장4	다-4	(1,288)	(1,288)	-	-	-	다-4	(1,288)	(1,288)	-	-	-	-
	야유회장5	다-5	(3,415)	(3,415)	-	-	-	다-5	(3,415)	(3,415)	-	-	-	-
	야유회장6	다-6	(274)	(274)	-	-	-	다-6	(274)	(274)	-	-	-	-
	야유회장7	다-7	(360)	(360)	-	-	-	다-7	(360)	(360)	-	-	-	-
	야유회장8	다-8	(1,409)	(1,409)	-	-	-	다-8	(1,409)	(1,409)	-	-	-	-
파고라	①	-	-	-	-	15	①	-	-	-	-	15	-	
유 희 시 설	소 계		767	767	-	-	9		767	767	-	-	9	-
	어린이놀이터	라	767	767	-	-	-	라	767	767	-	-	-	-
	어린이놀이터 1	라-1	(460)	(460)	-	-	-	라-1	(460)	(460)	-	-	-	-
	어린이놀이터 2	라-2	(307)	(307)	-	-	-	라-2	(307)	(307)	-	-	-	-
	조합놀이대	②	-	-	-	-	3	②	-	-	-	-	3	-
흔들놀이	③	-	-	-	-	6	③	-	-	-	-	6	-	
운 동 시 설	소 계	-	12,324	12,324	-	-	10	-	12,324	12,324	-	-	10	-
	다목적운동장	마	7,700	7,700	-	-	-	-	-	-	-	-	-	감) 7,700m ²
	다목적운동장 1	-	-	-	-	-	-	마	7,700	7,700	-	-	-	증) 7,700m ²
	농구장	바	957	957	-	-	-	-	-	-	-	-	-	감) 957m ²
	다목적운동장 2	-	-	-	-	-	-	바	957	957	-	-	-	증) 957m ²
	배드민턴장	사	1,193	1,193	-	-	-	사	447	447	-	-	-	-
	배드민턴장1	사-1	(746)	(746)	-	-	-	사-1	(746)	(746)	-	-	-	-
	배드민턴장2	사-2	(447)	(447)	-	-	-	사-2	(447)	(447)	-	-	-	-
	체력단련장	아	465	465	-	-	-	아	465	465	-	-	-	-
	체력단련장1	아-1	(342)	(342)	-	-	-	아-1	(342)	(342)	-	-	-	-
체력단련장2	아-2	(123)	(123)	-	-	-	아-2	(123)	(123)	-	-	-	-	
족구장	자	836	836	-	-	-	자	836	836	-	-	-	-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²)		공 작 물 (기)	부 호	부 지 면 적 (m ²)	시 설 면 적 (m ²)	건 축 물 (m ²)		공 작 물 (기)	
					바 닥 면 적	연 면 적					바 닥 면 적	연 면 적		
	인라인장	차	1,133	1,133	-	-	-	차	1,133	1,133	-	-	-	
	지압보도	카	40	40	-	-	-	카	40	40	-	-	-	
	체력단련시설	④	-	-	-	-	10	④	-	-	-	-	10	
교 양 시 설	소 계	-	2,185	2,185	30	30	-	-	2,185	2,185	30	30	-	
	야외공연장	타	643	643	30	30	-	타	643	643	30	30	-	
	습지원	파	1,542	1,542	-	-	-	파	1,542	1,542	-	-	-	
	습지원1	파-1	(1,225)	(1,225)	-	-	-	파-1	(1,225)	(1,225)	-	-	-	
	습지원2	파-2	(317)	(317)	-	-	-	파-2	(317)	(317)	-	-	-	
편 익 시 설	소 계	-	4,749.5	4,749.5	192.58	230.08	-	-	4,749.5	4,749.5	192.58	230.08	-	
	전망대	하	113	113	40	40	-	하	113	113	40	40	-	
	주차장	거	4,363	4,363	-	-	-	거	4,363	4,363	-	-	-	
	주차장1	거-1	(3,270)	(3,270)	-	-	-	거-1	(3,270)	(3,270)	-	-	-	
	주차장2	거-2	(1,093)	(1,093)	-	-	-	거-2	(1,093)	(1,093)	-	-	-	
	매점	너	37.5	37.5	37.5	75	-	너	37.5	37.5	37.5	75	-	
	화장실	더	236	236	115.08	115.08	-	더	236	236	115.08	115.08	-	
	화장실1	더-1	(116)	(116)	(55.08)	(55.08)	-	더-1	(116)	(116)	(55.08)	(55.08)	-	
화장실2	더-2	(120)	(120)	(60)	(60)	-	더-2	(120)	(120)	(60)	(60)	-		
관 리 시 설	소 계	-	605	605	175.82	166.52	-	-	605	605	175.82	166.52	-	
	관리사무소	러	525	525	95.82	86.52	-	러	525	525	95.82	86.52	-	
	창고	머	80	80	80	80	-	머	80	80	80	80	-	
녹 지 및 기 타	소 계	-	165,222	-	-	-	-	-	165,222	-	-	-	-	
	녹 지	-	165,222	-	-	-	-	-	165,222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	4,657	14,943	-	-	-	
변경				-	4,657	14,943	-	-	-	
당초	소 계			-	(373)	(4,476)	-	-	-	
변경				-	(373)	(4,476)	-	-	-	
당초	중로	3	1		(373)	(4,476)	도시계획	동측계	북서측계	
변경		3	1		(373)	(4,476)	도시계획	동측계	북서측계	
당초	소 계			-	4,657	14,943	-	-	-	
변경				-	4,657	14,943	-	-	-	
당초	소로	1	1	10	428	4,280	연결로	남측계	동측계	
변경		1	1	10	428	4,280	연결로	남측계	동측계	
당초	소로	2	1	8	40	320	연결로	주차장1	관리사무소	
변경		2	1	8	40	320	연결로	주차장1	관리사무소	
당초	소로	3	1	1	19	19	연결로	광장15	소로3-3	
변경		3	1	1	19	19	연결로	광장15	소로3-3	
당초	소로	3	2	1.5	34	51	연결로	광장15	광장14	
변경		3	2	1.5	34	51	연결로	광장15	광장14	
당초	소로	3	3	2	43	86	연결로	광장15	광장3	
변경		3	3	2	43	86	연결로	광장15	광장3	
당초	소로	3	4	6	130	780	연결로	광장16	광장15	
변경		3	4	6	130	780	연결로	광장16	광장15	
당초	소로	3	5	6	82	492	연결로	광장15	광장13	
변경		3	5	6	82	492	연결로	광장15	광장13	
당초	소로	3	6	4	129	516	연결로	광장15	광장2	
변경		3	6	4	129	516	연결로	광장15	광장2	
당초	소로	3	7	3	26	78	연결로	광장12	광장11	
변경		3	7	3	26	78	연결로	광장12	광장11	
당초	소로	3	8	3	101	303	연결로	광장11	소로3-11	
변경		3	8	3	101	303	연결로	광장11	소로3-11	
당초	소로	3	9	3	12	36	연결로	광장3	광장14	
변경		3	9	3	12	36	연결로	광장3	광장14	
당초	소로	3	10	4	101	40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변경		3	10	4	101	40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당초	소로	3	11	4	36	14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변경		3	11	4	36	14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당초	소로	3	12	2	50	100	연결로	광장14	소로3-46	
변경		3	12	2	50	100	연결로	광장14	소로3-4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13	2	16	32	연결로	소로3-40	소로3-12	
변경		3	13	2	16	32	연결로	소로3-40	소로3-12	
당초	소로	3	14	4	22	88	연결로	소로1-1	다목적운동장	
변경		3	14	4	22	88	연결로	소로1-1	축구장	
당초	소로	3	15	4	9	36	연결로	관리사무소	인라인장	
변경		3	15	4	9	36	연결로	관리사무소	인라인장	
당초	소로	3	16	2	16	32	연결로	소로3-40	소로3-12	
변경		3	16	2	16	32	연결로	소로3-40	소로3-12	
당초	소로	3	17	1.5	14	21	연결로	소로3-40	소로3-46	
변경		3	17	1.5	14	21	연결로	소로3-40	소로3-46	
당초	소로	3	18	3	93	279	연결로	소로1-1	광장13	
변경		3	18	3	93	279	연결로	소로1-1	광장13	
당초	소로	3	19	3	14	42	연결로	소로3-4	인라인장	
변경		3	19	3	14	42	연결로	소로3-4	인라인장	
당초	소로	3	20	3	20	60	연결로	주차장1	인라인장	
변경		3	20	3	20	60	연결로	주차장1	인라인장	
당초	소로	3	21	1.5	16	24	연결로	소로3-22	소로3-46	
변경		3	21	1.5	16	24	연결로	소로3-22	소로3-46	
당초	소로	3	22	2	28	56	연결로	광장10	소로3-41	
변경		3	22	2	28	56	연결로	광장10	소로3-41	
당초	소로	3	23	3	54	162	연결로	광장7	전망대	
변경		3	23	3	54	162	연결로	광장7	전망대	
당초	소로	3	24	3	198	594	연결로	광장2	쉼터5	
변경		3	24	3	198	594	연결로	광장2	쉼터5	
당초	소로	3	25	2	136	272	등산로	소로3-11	남서측계	
변경		3	25	2	136	272	등산로	소로3-11	남서측계	
당초	소로	3	26	2	49	98	등산로	남서측계	소로3-21	
변경		3	26	2	49	98	등산로	남서측계	소로3-21	
당초	소로	3	27	2	41	82	등산로	소로1-1	남측계	
변경		3	27	2	41	82	등산로	소로1-1	남측계	
당초	소로	3	28	1.5	62	93	연결로	광장9	소로3-28	
변경		3	28	1.5	62	93	연결로	광장9	소로3-28	
당초	소로	3	29	2	30	60	연결로	소로3-40	광장11	
변경		3	29	2	30	60	연결로	소로3-40	광장11	
당초	소로	3	30	2	52	104	연결로	광장11	소로1-1	
변경		3	30	2	52	104	연결로	광장11	소로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31	2	15	30	연결로	섬터6	서측계	
변경		3	31	2	15	30	연결로	섬터6	서측계	
당초	소로	3	32	2	55	110	등산로	섬터5	북서측계	
변경		3	32	2	55	110	등산로	섬터5	북서측계	
당초	소로	3	33	2	20	40	연결로	소로3-23	소로3-73	
변경		3	33	2	20	40	연결로	소로3-23	소로3-73	
당초	소로	3	34	2	74	148	연결로	소로3-56	소로3-24	
변경		3	34	2	74	148	연결로	소로3-56	소로3-24	
당초	소로	3	35	2	81	162	등산로	섬터5	서측계	
변경		3	35	2	81	162	등산로	섬터5	서측계	
당초	소로	3	36	2	46	92	산책로	중로3-10	북서측계	
변경		3	36	2	46	92	산책로	중로3-10	북서측계	
당초	소로	3	37	2	31	62	산책로	광장2	광장3	
변경		3	37	2	31	62	산책로	광장2	광장3	
당초	소로	3	38	2	26	52	등산로	중로3-10	북측계	
변경		3	38	2	26	52	등산로	중로3-10	북측계	
당초	소로	3	39	2	90	180	등산로	소로3-81	남측계	
변경		3	39	2	90	180	등산로	소로3-81	남측계	
당초	소로	3	40	2	54	108	연결로	광장13	광장10	
변경		3	40	2	54	108	연결로	광장13	광장10	
당초	소로	3	41	2	32	64	연결로	소로3-8	광장9	
변경		3	41	2	32	64	연결로	소로3-8	광장9	
당초	소로	3	42	2	54	108	연결로	소로3-10	소로3-10	
변경		3	42	2	54	108	연결로	소로3-10	소로3-10	
당초	소로	3	43	2	62	124	연결로	소로3-10	소로3-82	
변경		3	43	2	62	124	연결로	소로3-10	소로3-82	
당초	소로	3	44	2	31	62	연결로	소로3-82	소로3-8	
변경		3	44	2	31	62	연결로	소로3-82	소로3-8	
당초	소로	3	45	2	32	64	연결로	소로3-8	소로3-12	
변경		3	45	2	32	64	연결로	소로3-8	소로3-12	
당초	소로	3	46	2	59	118	연결로	소로3-22	소로3-40	
변경		3	46	2	59	118	연결로	소로3-22	소로3-40	
당초	소로	3	47	2	35	70	연결로	소로3-10	소로3-82	
변경		3	47	2	35	70	연결로	소로3-10	소로3-82	
당초	소로	3	48	2	38	76	연결로	소로3-82	소로3-82	
변경		3	48	2	38	76	연결로	소로3-82	소로3-8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49	2	4	8	연결로	관리사무소	소로3-4	
변경		3	49	2	4	8	연결로	관리사무소	소로3-4	
당초	소로	3	50	2	52	104	산책로	광장8	소로3-46	
변경		3	50	2	52	104	산책로	광장8	소로3-46	
당초	소로	3	51	2	68	136	산책로	광장7	광장8	
변경		3	51	2	68	136	산책로	광장7	광장8	
당초	소로	3	52	2	63	126	산책로	광장7	광장5	
변경		3	52	2	63	126	산책로	광장7	광장5	
당초	소로	3	53	2	70	140	산책로	광장5	소로3-70	
변경		3	53	2	70	140	산책로	광장5	소로3-70	
당초	소로	3	54	2	35	70	산책로	소로3-24	광장3	
변경		3	54	2	35	70	산책로	소로3-24	광장3	
당초	소로	3	55	2	23	46	산책로	광장3	광장4	
변경		3	55	2	23	46	산책로	광장3	광장4	
당초	소로	3	56	2	53	106	산책로	광장4	광장5	
변경		3	56	2	53	106	산책로	광장4	광장5	
당초	소로	3	57	2	61	122	산책로	광장5	전망대	
변경		3	57	2	61	122	산책로	광장5	전망대	
당초	소로	3	58	3	19	57	연결로	소로3-60	광장1	
변경		3	58	3	19	57	연결로	소로3-60	광장1	
당초	소로	3	59	2	75	150	산책로	소로3-10	쉼터4	
변경		3	59	2	75	150	산책로	소로3-10	쉼터4	
당초	소로	3	60	2	57	114	산책로	소로3-10	쉼터3	
변경		3	60	2	57	114	산책로	소로3-10	쉼터3	
당초	소로	3	61	2	49	98	연결로	중로3-10	소로3-10	
변경		3	61	2	49	98	연결로	중로3-10	소로3-10	
당초	소로	3	62	2	22	44	산책로	광장6	소로3-52	
변경		3	62	2	22	44	산책로	광장6	소로3-52	
당초	소로	3	63	2	40	80	산책로	야외공연장	광장15	
변경		3	63	2	40	80	산책로	야외공연장	광장15	
당초	소로	3	64	2	45	90	산책로	야외공연장	소로3-6	
변경		3	64	2	45	90	산책로	야외공연장	소로3-6	
당초	소로	3	65	2	82	164	산책로	소로3-61	광장2	
변경		3	65	2	82	164	산책로	소로3-61	광장2	
당초	소로	3	66	2	31	62	연결로	전망대	쉼터6	
변경		3	66	2	31	62	연결로	전망대	쉼터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67	2	98	196	산책로	전망대	소로3-68	
변경		3	67	2	98	196	산책로	전망대	소로3-68	
당초	소로	3	68	2	75	150	산책로	소로3-67	쉽터5	
변경		3	68	2	75	150	산책로	소로3-67	쉽터5	
당초	소로	3	69	2	66	132	산책로	소로3-70	소로3-68	
변경		3	69	2	66	132	산책로	소로3-70	소로3-68	
당초	소로	3	70	2	69	138	산책로	소로3-24	소로3-68	
변경		3	70	2	69	138	산책로	소로3-24	소로3-68	
당초	소로	3	71	2	27	54	산책로	소로3-57	소로3-67	
변경		3	71	2	27	54	산책로	소로3-57	소로3-67	
당초	소로	3	72	2	45	90	산책로	소로3-23	소로3-67	
변경		3	72	2	45	90	산책로	소로3-23	소로3-67	
당초	소로	3	73	2	69	138	산책로	광장8	소로3-51	
변경		3	73	2	69	138	산책로	전망대	소로3-73	
당초	소로	3	74	2	41	82	산책로	전망대	소로3-73	
변경		3	74	2	41	82	산책로	전망대	소로3-73	
당초	소로	3	75	3	68	204	산책로	소로3-51	소로3-5	
변경		3	75	3	68	204	산책로	소로3-51	소로3-5	
당초	소로	3	76	2	31	62	연결로	소로3-5	소로3-75	
변경		3	76	2	31	62	연결로	소로3-5	소로3-75	
당초	소로	3	77	2	26	52	연결로	소로3-5	소로3-75	
변경		3	77	2	26	52	연결로	소로3-5	소로3-75	
당초	소로	3	78	2	21	42	산책로	소로3-5	광장6	
변경		3	78	2	21	42	산책로	소로3-5	광장6	
당초	소로	3	79	2	54	108	산책로	소로3-6	광장6	
변경		3	79	2	54	108	산책로	소로3-6	광장6	
당초	소로	3	80	2	21	42	산책로	야외음악당	소로3-65	
변경		3	80	2	21	42	산책로	야외음악당	소로3-65	
당초	소로	3	81	2	34	68	산책로	소로3-6	광장3	
변경		3	81	2	34	68	산책로	소로3-6	광장3	
당초	소로	3	82	2	77	15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변경		3	82	2	77	154	연결로	소로1-1	소로3-8	
당초	소로	3	83	2	50	100	연결로	소로3-38	소로3-36	
변경		3	83	2	50	100	연결로	소로3-38	소로3-3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9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대성제이테크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52호)	김종구	2008.11.24.	기술인력 변경	고성철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여은성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장천용 (대기환경기사)	좌동
				조영남 (산업위생관리기사)	좌동
				박창범 (건설기계산업기사)	좌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4호선, 대2-7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합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7-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4호선, 대2-7호선)사업
 - 명칭: 용현동 주거복합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950.0㎡
 - 광3-4호선: 연장(L)=220m, 폭(B)=1.8~7.3m
 - 대2-7호선: 연장(L)= 11m, 폭(B)=2.2~4.5m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서영철(인천용현지역주택조합)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37번길 30 102-8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제출 방법: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8.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9.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미추홀구 용현동	575	도	42,172.9	352.3		인천광역시					
2	미추홀구 용현동	627-483	도	29	29		인천광역시					
3	미추홀구 용현동	627-517	도	1,740	323		국(기획재정부)					
4	미추홀구 용현동	627-492	도	2,139	165		인천광역시					
5	미추홀구 용현동	627-548	도	5,326	80.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리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1.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결 정	초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박두성 선생 생가공원	역사 공원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3번지 일원	-	증) 17,870	17,87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박두성 선생 생가공원	○ 역사공원 신설 - 17,870㎡	○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북부지역 관광거점지로 명소화하고자 함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2,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7, 강화읍 강화대로394)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문화관광과, 032-930-3577, 강화읍 강화대로394)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2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관리 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면적: 5,593m²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593	-	5,59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593	5,593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593	감) 5,593	-	-	

2. 도시관리계획(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명: 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9-1번지 일원
- 주요내용
 - 가. 구역면적: 기정) 254,614㎡ → 변경) 264,558㎡[증) 9,944㎡]
 - 나.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다. 도시계획시설
 - 도로: 소로1-5호선 편입, 소로3-3호선 폐지
 - 공원: 갈산근린공원 면적 변경[감)98㎡]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2개 가구 결정(신설), 공동개발(지정)
 -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5, 남동구 정각로 29)
-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 부평구 부평대로 168)

5.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2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엔비텍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41호)	이종윤	2021. 1.22.	기술인력 변경	문경득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좌동
				서재철 (대기환경기사2급) [대체기사]	좌동
				박동필 (전기산업기사) [대체전기기사]	좌동
				김병일 (산업위생관리기사)	김민선 (산업위생관리기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632호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구별 배분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 표1제3호머목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각 구별 택시공동차고지 배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구별 배정내역

구분	계	시보유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비고
택시 공동차고지	12	3	제외	제외	4	1	2	2	

※ 시 보유물량 3개는 배분계획에서 제외된 구에서 배분 요구 및 배정 수량을 소진한 구에서 배분 요청 시 검토 후 배분 예정

2. 적용일: 공고일부터

3. 기타사항: 허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당구청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 문의.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2-221호

은골1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은골1 공영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고 명: 은골1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안전사고 예방
3. 설치현황

설치장소	은골1 공영주차장(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05-1)		
설치목적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안전사고 예방 등		
CCTV 운영책임관	인천시설공단	연락처	032-456-2786
촬영시간	00시 ~ 24시(24시간)		
영상자료보유기간	30일 이내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4. 설치수량: 2대
5. 공고기간: 2022. 10. 7.~10. 26.(20일간)
6. 의견제출: 2022. 10. 7.~10. 26.(20일간)
7. 공고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참조 : 영종청라기반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2) 전화번호: 032)453-7772 / 팩스 : 032)440-8831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붙임 1】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운서역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의견 제출인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장소		제출의견		
운서역 공영주차장				
<p>‘운서역 공영주차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관련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p>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440-8831) [문의 : ☎032-453-777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41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10.5.~2022.10.20.(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년 10월 31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026	최*일	경기도여주시 우암로 190 (월송동, 월송마을 한성아파트) 101동 1504호	2022.1.18. 05:19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이동3반	축하중1.95톤 초과(4축하중11.95톤)	경기98 자8098	500,000	반송(폐문부재)	
2	000102	이*단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유곡로 20 (당진엠포타운) 101동 1301호	2022.3.3. 04:49	서구 원창동 북항로 이동5반	축하중1.75톤 초과(5축하중11.75톤)	충남94 바1519	500,000	반송(폐문부재)	
3	000147	이*희	인천광역시부평구 하정로 11-3 (십정동) 2층	2022.3.25. 14:17	연수구 송도동 인천타워대로 이동5반	길이1.90미터 초과(총길이18.60미터)	경기98 아6097	300,000	반송(폐문부재)	
4	000161	하*철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병천로32 0번길 21, 301호	2022.4.7.10 :08	남동구 고잔동 청능대로 이동2반	폭0.27미터 초과(총폭2.77미터)	경북98 사2113	300,000	반송(폐문부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41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10. 8. ~ 2022. 10. 23.(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22. 12. 30.까지
 -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

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2년 12월 30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연도	과태료부과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2	000246	홍*수	791008-***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 42-1 (창전동)	2022.5.25. 09:37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3반	폭0.28미터 초과(총폭2.78 미터)	강원80바5 612	300,000	반송(폐문부재)	
2	2022	000269	양*은	650303-***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43 (극동미래주아파트) 101동 203호	2022.6.14. 05:10	서구 원창동 북항로 이동5반	축하중1.75톤 초과(6축하중1 1.75톤)	충북98바2 486	1,000,000	반송(이사감)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4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510호, 2022. 1. 20. 시행 및 제18831호, 2022. 8. 4. 시행)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여 가로구역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6호)
-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분양주택 규모, 분양 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포함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율 신설(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인계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주거재생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34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510호, 2022. 1. 20. 시행 및 제18831호, 2022. 8. 4. 시행)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여 가로구역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6호)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분양주택 규모, 분양 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포함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율 신설(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인계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0. 11. ~ 2022. 10. 31.)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심의
(2022. 10. 5 ~ 10. 20.)

인천광역시조례 제2022-124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제18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5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 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관계 서류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② (생략)</p> <p>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1. ~ 5. (생략)</p> <p>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존치지역</u></p> <p>7. (생략)</p>	<p>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재정비촉진지구</u>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존치지역</u></p> <p>7. (현행과 같음)</p>
<p>제18조(<u>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u>)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u>가로주택정비사업</u>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제18조(<u>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u>) ----- <u>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u>-----</p> <p>-----</p> <p>1.·2. (현행과 같음)</p>
<p>제19조(<u>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u>)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p>	<p>제19조(<u>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u>) ① -</p>

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2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 7. (생략)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 주택의 건설 비율) ①·② (생략)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1. ~ 7. (현행과 같음)

제2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 주택의 건설 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

<신 설>

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관계 서류 및 인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6조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58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가 인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개정함.

나.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을 추가함(안 제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enknigh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소 :			
○성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p> <p>“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보급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건강보건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2-59호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또한,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enknigh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채용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 로 부터 2년으로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실태조사 (안 제7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원사업 (안 제9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3년에 1회 실시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 지속 추진
- 보육교직원 노동법 교육 비용은 '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강사수당 기준에 근거
-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홍보물 3년에 1회 제작
-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 추계 결과

- 보육교직원 실태조사 비용 : 22,000천원
 - 실태조사 3년에 1회 추진
 - ※ '22년 인천시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단가 : 22,000천원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 65,130천원
 - ※ 기 진행중인 보육교직원 상담, 마음휴식 프로젝트 지속 추진

- 보육교직원 상담 220회(1,100명) : 44,130천원
 - 개인 및 집단 상담 180회, 비대면(화상, 전화 등) 상담 및 센터내방 상담 등 40회
-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프로젝트(2,300명) : 21,000천원
 - 인문학 특강 4회, 수공예 등 체험활동 10회, 어린이집별 마음챙김 체험키트 160개소
-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 1,000천원
 - 보육교직원 노동법 집합교육 (1시간 25만원, 100명) × 4회 = 1,000천원
 - 보육교직원 노동법 동영상교육 : 육아중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 5,000천원
 - 홍보물 (4,000부×1,250원) = 5,000천원
-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노동법률상담소 연계
-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582,225천원
 - 16,635명×35,000원 = 582,225천원

(단위: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계	675,355	648,355	648,355	675,355	648,355	3,295,775
실태조사비	22,000	-	-	22,000	-	44,000
상담 및 심리안정	65,130	65,130	65,130	65,130	65,130	325,650
권익 보호 교육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홍보	5,000	-	-	5,000	-	10,000
예방접종	582,225	582,225	582,225	582,225	582,225	2,911,125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일반회계	-	-	-	-	-	-
	소계	-	-	-	-	-	-
세출	일반회계	675,355	648,355	648,355	675,355	648,355	3,295,775
	소계	675,355	648,355	648,355	675,355	648,355	3,295,775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675,355	648,355	648,355	675,355	648,355	3,295,775
	일반회계	675,355	648,355	648,355	675,355	648,355	3,295,775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안 제23조제7항제1호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1회와 2회로 한정한다.

제23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법」 <input type="checkbox"/>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최기건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66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학원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교육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1 ~ 별표3)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정보분야’와 ‘정보계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의 교습과정을 신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의 일반서비스 계열에 ‘애견미용’ 교습과정을 ‘애견미용·훈련’으로 개정하여 ‘애견훈련’ 교습과정을 신설
 - 현행 ‘인문사회’분야와 ‘인문사회’계열에 ‘자연’분야와 계열을 추가함
 - 교습과정 신설 및 교습과 학습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동차’와 ‘애견훈련’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함
- 나. 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의2제2호)
- 다.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의 교습과정 중 응변, 화술을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3제2항 관련)
- 라.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않은 교습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의3제3항)
- 마. 재난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학원 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
- 바.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과정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일시 수용 능력 인원 산정에 반영함(안 제4조)
- 사.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교과별’이 아닌 ‘교습대상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의2)
- 아. 원격교습학원 시설 면적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원격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별표 7]을 개정(안 제2조의6 관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미래학교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angel4min@ice.go.kr
- 2) 우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3) 팩스: 032-420-8228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붙임1”

5. 개정조례안: “붙임2”

6. 규제영향분석서: “붙임3”

[붙임2]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본문 중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를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영화·연극·모델·무용·전통무용”을 “영화·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댄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을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은”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 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3과 같음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90㎡ 이상	60㎡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정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120㎡ 이상	60㎡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응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 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 컬, 오페라 등)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 만 들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키능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자동차정비, 항공, 해양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 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 서비스		애견미용· 훈련 ,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coordinator),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응변, 화술	
독서실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2조의3제3항 관련)

교 습 과 정	시 설·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 공작기계 2대 이상 나) 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가. 시설 1) 중기운전과정 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 나) 기재실 : 15㎡ 이상 2) 자동차 ,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 가) 강의실 : 30㎡ 이상 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 다) 기재실 : 1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중기운전 과정 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 나) 엔진체 1대 이상

	<p>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p> <p>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p> <p>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p> <p>가) 자동차 3대 이상</p> <p>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p> <p>다) 디젤 기관 1대 이상</p> <p>라) 변속기 2대 이상</p> <p>마) 차동기 2대 이상</p> <p>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p> <p>사) 휠 바란스 1대</p> <p>아) 차량용리프트 1대 이상</p> <p>자) 휠얼라이먼트 1대</p> <p>차) 배기가스테스터기(CO, HC겸용) 1대</p> <p>카)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p> <p>타) 헤드라이트시험기 1대</p> <p>파) 밧데리 테스터기 1대</p> <p>하) 타이어 탈착기 1대</p> <p>거) 에어컨 가스 주입기 1대</p> <p>네)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 금속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귀금속 가공 과정</p> <p>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p> <p>나) 사출기 1대 이상</p> <p>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p> <p>라)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p> <p>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p> <p>바) 실습대 5대 이상</p> <p>2) 보석감정 과정</p> <p>가) 현미경 2인당 1대</p> <p>나) 굴절계 2인당 1대</p> <p>다)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p> <p>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p> <p>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p> <p>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p> <p>사) 이색경 2대 이상</p> <p>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 화공 및 세라믹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 전기(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1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1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1대 바) 22.9KV MOF 1세트 사) 큐비클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 4) 실험.실습대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 통신	<p>가.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 운용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모뎀(Modem) 1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7. 전자	<p>가.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통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파전자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p>(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전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8. 조선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9. 항공	<p>가. 시설 1) 강의실 : 3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 가) 고정익 1대 이상 나) 회전익 1대 이상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 기관 가) TURBO JET 1대 이상 나) TURBO PROP 2대 이상 다) TURBO SHAFT 2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10. 토목, 건축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11. 의복, 섬유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p> <p>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p>3) 양재, 한복과정</p> <p>가) 미싱 5대 이상</p> <p>나) 마네킹 3대 이상</p> <p>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2. 광업자원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화학류 관리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철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기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p> <p>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3. 국토개발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p> <p>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p>
14. 농림(동물)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사육과정</p> <p>가) 사육장 : 300㎡ 이상</p> <p>나) 동물 3종 이상</p> <p>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p> <p>2) 박제과정</p> <p>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p> <p>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p> <p>3) 모피피혁과정</p> <p>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p> <p>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5. 해양	<p>가. 시설</p> <p>1) 강의실 : 30㎡ 이상</p> <p>2)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p> <p>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양카 1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p> <p>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 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6. 에너지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7. 환경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p> <p>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8. 공예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19. 교통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p> <p>다. 그 밖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20. 안전관리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냉난방(열관리) 과정</p> <p>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p> <p>나) 버너 2대 이상</p> <p>다) 가스분석기</p> <p>2) 소방설비 과정</p> <p>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다) 방호장치 5종 이상</p> <p>라) 보호구 1종 이상</p> <p>마) 안전기기 1종 이상</p> <p>바) 측정공구 1종 이상</p> <p>3) 산업안전 과정</p> <p>가) 소방 및 가스설비</p> <p>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1. 조경	<p>가.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22. 디자인	<p>가. 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p> <p>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p> <p>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p> <p>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p> <p>2) 그래픽 디자인과정</p> <p>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p> <p>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p> <p>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p> <p>3) 섬유 디자인과정</p> <p>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p> <p>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p> <p>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p> <p>4) 디스플레이 과정</p> <p>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p> <p>나) 쇼 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p> <p>5) 패션디자인과정</p> <p>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p> <p>나) 모타 미싱 5대 이상</p> <p>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p> <p>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p> <p>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p> <p>바) 오바로크 1대 이상</p> <p>사) 다리미 1대 이상</p>

<p>23. 이용·미용</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공통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p>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과정 이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염제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청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p>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4.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p>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kg)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T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 . 커피(바리스타)

	<p>가) 소물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p> <p>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5. 포장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6. 인쇄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인쇄기 1종 이상</p> <p>2) 복사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7. 사진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2) 암실 : 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사진기 1종 이상</p> <p>2) 확대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8. 피아노조율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정음작업대 1대 이상</p> <p>2) 조율튜우너, 튜닝햄머 각 1대 이상</p> <p>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p> <p>4) 피아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9. 속기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0.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p> <p>2) 주변기기 1대 이상</p> <p>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p>가. 시설</p>

컨벤션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2. 텔레마케팅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3. 카지노딜러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4. 도배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5. 미장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6. 세탁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 다리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7. 애견미용·훈련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미용 가)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 나) 욕조 1대 이상 2) 애견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8. 장의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대 이상</p>

	<p>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 3) 관 1개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0. 항공승무원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1. 청소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3. 출판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4. 영상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VHS형 VTR 1대 이상 2) U메타 VTR 1대 이상 3) VTR 카메라 1대 이상 4) 모니터 1대 이상 5) 조명기구 1조 이상 6) 편집기 1대 이상 7) 자막기 1대 이상 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5. 음반	<p>가. 시설 1) 실습실</p>

	<p>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 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 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6. 영화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영화기술과정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7. 방송	<p>가. 공통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 2) 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S.VHS 편집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베타캠 편집실

- (1) 기재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캠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 (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
- (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

(2) 설비 및 교구

-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나) 방송용 녹음기(REER DECK) 1대 이상
-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 (차) CASSETTE DECK 1대
- (카) COMPACT DISK 1대
-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 장비

-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 (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 나)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p>4) 아나운싱.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p> <p>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p>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8.캐릭터(character)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9. 관광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 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0. 간호조무사	<p>가. 시설 1) 강의실 : 60㎡ 이상 2)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궤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1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셀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1. 주산	<삭 제>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p>가. 시설 음악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 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 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3. 미술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4. 무용(전통무용, 현대 무용 등)	<p>가. 시설 1) 무용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2) 탈의실 : 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음향기기 1대 이상</p> <p>2) 대형거울</p> <p>3) 바(bar) (현대무용)</p> <p>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전통무용)</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5. 댄스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2) 탈의실 : 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음향기기 1대 이상</p> <p>2) 대형거울</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6. 서예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베틀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p> <p>2) 서법도서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7.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58. 만화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라이트박스 1인당 1조</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9.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모델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 :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 1조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0. 응변, 화술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61. 마술(매직)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62. 바둑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읍·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2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p>
63. 독서실	<p>가. 시설 실습실 : 90㎡ 이상 (읍·면지역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p>
64. 특수교육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삭 제>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7]

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

(제2조의6 관련)

1.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

가. 구비

-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 5) 항온항습기 1대 이상
-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 7) 보안수준
 -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나. 임차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u>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u> 다만, <u>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u>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3. ~ 6. (생략)</p>	<p>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되도록</u> ----- ----- . --- <u>이용자</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p> <p>①·② (생략)</p> <p>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u>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u></p>	<p>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다만, 별표 3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u></p>

항은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② ~ ⑤ (생략)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및 기준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을 준용하되, 유사한 교습과정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 2.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중기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 당 1명 이하, 영화·연극·모델·무용·전통무용 교습과정은 2.3제곱미터 당 1명 이하, 피아노 교습과정은 3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생략)

-----.

----- 영화·연기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모델·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댄
스 -----
-----.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서식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원 일반과목	입시·검정 시험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통정수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음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부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독서 교육		90㎡ 이상 60㎡ 이상	
	기타	기타	전과점	60㎡ 이상		
학원 특수과목	자기 개발	산악·수상·기타 스포츠·레크리 이션·댄스·태권 ·유도·태권도·태권 ·검도·호신술·가 ·악기·미술·음악· ·체육·보통교과· ·간호·보통교과· ·기타	전과점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점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실용대상 어학, 영어, 한·일	120㎡ 이상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인문·사회·자연 ·실용교과· ·실용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실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원교과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음		90㎡ 이상	60㎡ 이상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비고
				시 지역	읍·면지역	
학원 일반과목	입시·검정 시험	보통교과	입시형태	300㎡ 이상	150㎡ 이상	
			검정고시	60㎡ 이상	60㎡ 이상	
			보통, 정수	60㎡ 이상	60㎡ 이상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음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부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 이상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미술·무용	6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독서 교육		90㎡ 이상 6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별표3과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독서 교육		90㎡ 이상 60㎡ 이상	
기타	기타	전과점	60㎡ 이상			
학원 특수과목	자기 개발	산악·수상·기타 스포츠·레크리 이션·댄스·태권 ·유도·태권도·태권 ·검도·호신술·가 ·악기·미술·음악· ·체육·보통교과· ·간호·보통교과· ·기타	전과점		별표 3과 같음	
			경영사무관리	전과점		60㎡ 이상
	국제화	국 제	실용대상 어학, 영어, 한·일	120㎡ 이상	60㎡ 이상	
	인문 사회 자연	인문 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실용교과· ·실용고시	60㎡ 이상		
	기 예	기 예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서실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원교과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음		90㎡ 이상	60㎡ 이상	

현행

개정안

【별표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별표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두어야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학교교과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현행

【별표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항목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배수 가능 학생의 비 상과실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생의 비상과실	강의실과 실습 실을 같이 두어 야 하는 학생의 비상과실
필수 과목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 기, 통신, 전자, 보스, 항공, 보류, 건축, 외부, 섬유, 광업자원, 복조개발, 용민, 해양, 에너지, 화학, 양어, 보류, 안전관 리, 보류	자동차장비, 항 해, 해양
		산업공 예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제조(보류스타 수출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보류	
		산업서 비스		속기, 전산화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접촉상 활, 유희마케팅, 카지노딜러, 보류, 미 장, 세탁	
		일반서 비스		애견미용, 강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프트웨어 등), 게임, 보류	
		문화관 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character), 관광	
		간호보 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 무관리	회계, 보험, 무역, 무역 산, 비서, 경영, 컴 사, 무기, 무산, 승선, 승선, 임대		
		국제	실용대상이학, 통역, 번역		
		인문 사회	대학편입, 경영, 경영, 회계, 통계, 실인포시		
기예	동양, 화합	음악, 무용(정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 예, 단화, 무용, 화합, 마술(매직), 실용 음악(선악), 보류, 공예(종이접기, 꽃꽂 이, 꽃기예 등), 무예, 미술, 단소(「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제외), 연기(연극, 무 집단, 유희라 등)			
특서실	학교표과교습학생에 속하지 않는 특서실				

개정안

【별표2】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 및 강의실의 설치기준(제2조의3 제2항관련)

항목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또는 열람 실만 배수 가능 학생의 비상과실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는 학생 의 비상과실	강의실과 실습 실을 같이 두 어야 하는 학 생의 비상과실
필수 과목	직업 기술	산업기 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 자, 조선, 항공, 보류, 건축, 외부, 섬유, 광업자원, 복조개발, 용민, 해양, 에너지, 화학, 공예, 보류, 안전관리, 보류	자동차장비, 항 해, 해양
		산업공 예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제조(보류, 제작·제 향, 바리스타, 수출리에 등), 포장, 인쇄, 사 진, 피아노보류	
		산업서 비스		속기, 전산화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 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접촉상담, 유희마케팅, 카지노딜러, 보류, 미장, 세탁	
		일반서 비스		애견미용·훈련, 강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 프웨어 등), 게임, 보류	
		문화관 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 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 무관리	회계, 보험, 무역, 무역산, 비서, 경영, 컴퓨터, 무기, 무산, 승선, 승선, 임대		
		국제	실용대상이학, 통역, 번역		
		인문 사회· 자연	대학편입, 경영, 경영, 회계, 통 계, 실인포시		
기예		음악, 무용(정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단화, 무용, 화합, 마술(매직), 실용음악(선 악), 보류,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무예, 미술, 단소(「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 관광,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유희라 등), 음 연, 화합			
특서실	학교표과교습학생에 속하지 않는 특서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 기계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 공작기계 2대 이상 나) 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 기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기계공작(정비) 과정 가) 공작기계 2대 이상 나) 드릴머신 1대 이상 2) 기계제도(설계) 과정 CAD설계용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3) 용접(배관) 과정 가) 산소용접기 2세트 이상 나)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다) 특수용접기 3세트 이상 라) 파이프 바이스 5대 이상 마) 파이프 커터 5개 이상 바) 파이프 렌치 5개 이상 사) 작업대 2조 이상 4) 판금과정 가) 유압 또는 진동전단기 1대 이상 나) 벤딩 머신 1대 다) 핸드 시어 5개 이상 라) 산소 또는 전기용접기 2세트 이상 5) 냉동기계(가스) 과정 가) 냉동 유니트 2대 이상 나) 분해조립형 압축기 2대 이상 다) 밀폐형 압축기 2대 이상 라) 진공펌프(회전식 압축기) 1대 이상 마) 응축기, 증발기 각 1대 이상 바) 작업대 3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2. 자동차	<p>가. 시설</p> <p>1) 중기운전과정</p> <p>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p> <p>나) 기재실 : 15㎡ 이상</p> <p>2)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p> <p>가) 강의실 : 30㎡ 이상</p> <p>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p> <p>다) 기재실 : 1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중기운전 과정</p> <p>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p> <p>나) 엔진체 1대 이상</p> <p>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 (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p> <p>2)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p> <p>가) 시동용 자동차 엔진 3대 이상</p> <p>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p> <p>다) 디젤 기관 1대 이상</p> <p>라) 변속기 2대 이상</p> <p>마) 차동기 2대 이상</p> <p>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p> <p>사) 휠 밸런스 1대</p> <p>아) 캠버 게이지 1대</p> <p>자) 밧데리 테스터기 1대</p> <p>차) 타이어 탈착기 1대</p> <p>카) 에어콘 가스 주입기 1대</p> <p>타)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 기관</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 자동차</p> <p>가. 시설</p> <p>1) 중기운전과정</p> <p>가) 운전실습장 : 900㎡ 이상</p> <p>나) 기재실 : 15㎡ 이상</p> <p>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p> <p>가) 강의실 : 30㎡ 이상</p> <p>나) 정비 실습실 : 60㎡ 이상</p> <p>다) 기재실 : 1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중기운전 과정</p> <p>가) 중기 가동완전품 2대 이상</p> <p>나) 엔진체 1대 이상</p> <p>다)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2대 이상 (라)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p> <p>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과정</p> <p>가) 자동차 3대 이상</p> <p>나) 가솔린 기관 3대 이상</p> <p>다) 디젤 기관 1대 이상</p> <p>라) 변속기 2대 이상</p> <p>마) 차동기 2대 이상</p> <p>바)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p> <p>사) 휠 밸런스 1대</p> <p>아) 차량올리프트 1대 이상</p> <p>자) 휠얼라이먼트 1대</p> <p>차) 배기가스테스터기(CO,HC겸용) 1대</p> <p>카)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p> <p>타) 헤드라이트시험기 1대</p> <p>파) 밧데리 테스터기 1대</p> <p>하) 타이어 탈착기 1대</p> <p>거) 에어콘 가스 주입기 1대</p> <p>너)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농기구</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3. 금속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귀금속 가공 과정</p> <p>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p> <p>나) 사출기 1대 이상</p> <p>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p> <p>라) 압연기전기로리 1대 이상</p> <p>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p> <p>바) 실습대 5대 이상</p> <p>2) 보석감정 과정</p> <p>가) 현미경 2인당 1대</p> <p>나) 굴절계 2인당 1대</p> <p>다) 보석용비중측정결용) 정밀저울 1대 이상</p> <p>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p> <p>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p> <p>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p> <p>사) 이색경 2대 이상</p> <p>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 금속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귀금속 가공 과정</p> <p>가) 산소용접기 1대 이상</p> <p>나) 사출기 1대 이상</p> <p>다) 고무모형 압축기 1대 이상</p> <p>라) 압연기전기로리 1대 이상</p> <p>마) 모루 2인당 1대 이상</p> <p>바) 실습대 5대 이상</p> <p>2) 보석감정 과정</p> <p>가) 현미경 2인당 1대</p> <p>나) 굴절계 2인당 1대</p> <p>다) 보석용비중측정결용) 정밀저울 1대 이상</p> <p>라)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p> <p>마)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p> <p>바)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p> <p>사) 이색경 2대 이상</p> <p>아) 각 보석류 1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10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 화공 및 세라믹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 화공 및 세라믹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3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5. 전기(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p> <p>2) 수전, 송전, 배전설</p> <p>가) <u>특고압용 변압기 150KVA</u>이상 1대</p> <p>나) <u>특고압용 인덕턴스 스위치</u> 1대</p> <p>다) COS 1대</p> <p>라) <u>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u> 이상 1대</p> <p>마) 22.9KV용 피뢰기 1대</p> <p>바) 22.9KV MOF 1세트</p> <p>사) 규비클 1대 이상</p> <p>3) 오일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p> <p>4) 실험실습대 5대 이상</p> <p>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5. 전기(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직류전동기, 단상유도전동기, 3상유도전동기 각 3대 이상</p> <p>2) 수전, 송전, 배전설</p> <p>가) <u>특고압용 변압기 150KVA</u>이상 1대</p> <p>나) <u>특고압용 인덕턴스 스위치</u> 1대</p> <p>다) COS 1대</p> <p>라) <u>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u> 이상 1대</p> <p>마) 22.9KV용 피뢰기 1대</p> <p>바) 22.9KV MOF 1세트</p> <p>사) 규비클 1대 이상</p> <p>3) 오일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주파수계, 전력계, 전류계 각 3대 이상</p> <p>4) 실험실습대 5대 이상</p> <p>5) 전기공사 실습작업대 5대 이상</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 통신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정보통신 운용과정</p> <p>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p> <p>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p> <p>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p> <p>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p> <p>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p> <p>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p> <p>2) 정보통신 설비과정</p> <p>가) 모뎀(Modem) 1대 이상</p> <p>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p> <p>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p> <p>라) 오일로스코프 1대 이상</p> <p>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p> <p>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6. 통신</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정보통신 운용과정</p> <p>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p> <p>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p> <p>다) 터미널용 컴퓨터 10대 이상</p> <p>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p> <p>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10개 이상</p> <p>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1개 이상</p> <p>2) 정보통신 설비과정</p> <p>가) 모뎀(Modem) 1대 이상</p> <p>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p> <p>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p> <p>라) 오일로스코프 1대 이상</p> <p>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p> <p>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7. 전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전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1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수신기 1대 이상 라) 녹음기 1대 이상 마)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스위프발전기 1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4) 고전압계 1대 이상 (5) 텔레비전 1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1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 10대 이상 라) 비디오과정 (1) '나' 목 1)의 공통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VTR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1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		개정안	
[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0. 토목, 건축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가)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 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 한복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대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학류 관리과정 화학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철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 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화학류 관리과정 화학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철측정 전류측정기, 모의발파기 등 1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 실무용 실습기기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3. 국토개발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p> <p>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p>	13. 국토개발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p> <p>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p>
14. 농림(동물)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사육과정</p> <p>가) 사육장 : 300㎡ 이상</p> <p>나) 동물 3종 이상</p> <p>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p> <p>2) 박제과정</p> <p>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p> <p>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p> <p>3) 모피피혁과정</p> <p>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p> <p>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4. 농림(동물)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사육과정</p> <p>가) 사육장 : 300㎡ 이상</p> <p>나) 동물 3종 이상</p> <p>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p> <p>2) 박제과정</p> <p>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3점 이상</p> <p>나) 박제제작세트 1인당 1세트 이상</p> <p>3) 모피피혁과정</p> <p>가) 화공약품처리장 : 15㎡ 이상</p> <p>나)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6. 에너지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6. 에너지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 방사선 실험기기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수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수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17. 환경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대기, 수질과정</p> <p>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p> <p>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p> <p>2) 자연환경과정</p> <p>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p> <p>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p> <p>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17. 환경</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대기, 수질과정</p> <p>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p> <p>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대 이상</p> <p>2) 자연환경과정</p> <p>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p> <p>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p> <p>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18. 공예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수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p>18. 공예</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수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19. 교통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p> <p>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p> <p>다. 그 밖에 교수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p>19. 교통</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교통량 조사 장비류 1세트 이상</p> <p>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 프로그램) 1세트 이상</p> <p>다. 그 밖에 교수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20. 안전관리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냉난방(열관리) 과정</p> <p>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p> <p>나) 버너 2대 이상</p> <p>다) 가스분석기</p> <p>2) 소방설비 과정</p> <p>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다) 방호장치 5종 이상</p> <p>라) 보호구 1종 이상</p> <p>마) 안전기기 1종 이상</p> <p>바) 측정공구 1종 이상</p> <p>3) 산업안전 과정</p> <p>가) 소방 및 가스설비</p> <p>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0. 안전관리</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냉난방(열관리) 과정</p> <p>가) 보일러 2종 이상 및 그 부속장치</p> <p>나) 버너 2대 이상</p> <p>다) 가스분석기</p> <p>2) 소방설비 과정</p> <p>가)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나) LPG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p> <p>다) 방호장치 5종 이상</p> <p>라) 보호구 1종 이상</p> <p>마) 안전기기 1종 이상</p> <p>바) 측정공구 1종 이상</p> <p>3) 산업안전 과정</p> <p>가) 소방 및 가스설비</p> <p>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구 등 1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1. 조경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p>21. 조경</p>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22. 디자인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타 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 바) 오바로크 1대 이상 사)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22. 디자인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 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쇼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5) 패션디자인과정 가)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나) 모타 미싱 5대 이상 다) 인대마네킹 3대 이상 라)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마) 컴퓨터 미싱 1대 이상 바) 오바로크 1대 이상 사) 다리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23. 미용·미용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미용과정 가) 미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가)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업재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형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미용·미용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공통교구 1) 거울 2)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미용과정 미발의자 2개 2)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5개 이상 나) 미안대(거울) 5조 이상 3) 피부 미용과정 마사지 침대 1대 4) 네일아트과정, 메이크업과정,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5) 분장과정 가) 분장세트 10조 나) 가발 1종 10개 다) 마네킹 10개 라) 수업재료 일체 마) 상투류 10개 바) 시형각기구 1조 사) 특수분장제조기 1조 아) 조명시설 2조 자) 분장실습대 및 의자 5조 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p>24. 식음료품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p>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kg)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커피(바리스타) 가) 소믈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 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24.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p>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조리과정 가)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500ℓ)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과정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5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3대 이상 라) 실습대 2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추저울(5kg) 1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아)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자) 냉장고(500ℓ)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와인(소믈리에)·커피(바리스타) 가) 소믈리에 : 진열대, 조주대 각 1대 이상 나) 바리스타 :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로스터(로스팅머신) 각 1대 이상 단, 3)의 과정은 단독 또는 1), 2)의 과정과 병행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25. 포장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포장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교습 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인쇄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1종 이상 2) 복사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튠링행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셔,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1대 이상 2) 조율튜너, 튠링행머 각 1대 이상 3) 스테이셔,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1대 이상 4) 피아노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속기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30.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p> <p>2) 주변기기 1대 이상</p> <p>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0.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펜티엄급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1대 이상(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p> <p>2) 주변기기 1대 이상</p> <p>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설팅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1.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설팅기획, 소비자 전문상담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2. 텔레마케팅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2. 텔레마케팅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3. 카지노딜러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3. 카지노딜러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36. 세탁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p> <p>2) 회수건조기 1대 이상</p> <p>3) 물세탁기 1대 이상</p> <p>4) 스틱, 다리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6. 세탁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p> <p>2) 회수건조기 1대 이상</p> <p>3) 물세탁기 1대 이상</p> <p>4) 스틱, 다리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7. 애견미용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p> <p>2) 욕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7. 애견 미용·훈련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애견 미용</p> <p>가) 애견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대 이상</p> <p>나) 욕조 1대 이상</p> <p>2) 애견 훈련</p> <p>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8. 장의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열습대 1대 이상</p> <p>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p> <p>3) 관 1개 이상</p> <p>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38. 장의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열습대 1대 이상</p> <p>2) 수의(남,여 구분) 1세트 이상</p> <p>3) 관 1개 이상</p> <p>4) 실습용 마네킹 1개 이상</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0. 항공승무원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0. 항공승무원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1. 청소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1. 청소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등) 게임, 로봇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1)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소프트 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개인용 컴퓨터 1대 이상 (일시 수용인원 1인당 1대)</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3. 출판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3. 출판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44. 영상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VHS형 VTR 1대 이상</p> <p>2) U메타 VTR 1대 이상</p> <p>3) VTR 카메라 1대 이상</p> <p>4) 모니터 1대 이상</p> <p>5) 조명기구 1조 이상</p> <p>6) 편집기 1대 이상</p> <p>7) 자막기 1대 이상</p> <p>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4. 영상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VHS형 VTR 1대 이상</p> <p>2) U메타 VTR 1대 이상</p> <p>3) VTR 카메라 1대 이상</p> <p>4) 모니터 1대 이상</p> <p>5) 조명기구 1조 이상</p> <p>6) 편집기 1대 이상</p> <p>7) 자막기 1대 이상</p> <p>8) 더빙용 오디오세트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5. 음반	<p>가. 시설</p> <p>1) 실습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p> <p>2) Adat card 1대 이상</p> <p>3) 앰프 1대 이상</p> <p>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p> <p>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p> <p>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p> <p>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p> <p>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p> <p>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p> <p>10) 컴퓨터 1대 이상</p> <p>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p> <p>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5. 음반	<p>가. 시설</p> <p>1) 실습실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스튜디오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이상</p> <p>2) Adat card 1대 이상</p> <p>3) 앰프 1대 이상</p> <p>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이상</p> <p>5)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p> <p>6) 음향 이펙터 1대 이상</p> <p>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이상</p> <p>8) 모니터 앰프 1대 이상</p> <p>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p> <p>10) 컴퓨터 1대 이상</p> <p>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이상</p> <p>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6. 영화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영화기술과정 (가)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6. 영화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영화기술과정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p>가. 공통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적 45㎡ 이상)</p> <p>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p> <p>1) 부조정실</p> <p>가) 기재실 :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p> <p>(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3)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p> <p>(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p> <p>(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p> <p>(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p> <p>(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p> <p>(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p> <p>(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p> <p>2) 스튜디오</p> <p>가) 기재실 :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p> <p>(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p> <p>(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p> <p>3) 방송실습제작실</p> <p>가) S,VHS 편집실</p> <p>(1) 기재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p> <p>(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47. 방송</p> <p>가. 공통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적 45㎡ 이상)</p> <p>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p> <p>1) 부조정실</p> <p>가) 기재실 :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이상</p> <p>(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3) 동기신호발생기(SYNGENERATOR) 1대</p> <p>(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p> <p>(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p> <p>(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p> <p>(7) 고화질녹화기(S,VHS) 1대 이상</p> <p>(8)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p> <p>(9) 편집기(EDITOR) 1:1 또는 2:2 1대</p> <p>2) 스튜디오</p> <p>가) 기재실 : 3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VHS CAMERA) 2대</p> <p>(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p> <p>(3) 영상 및 음향감시기(VIDEO & AUDIO MONITOR) 1대 이상</p> <p>3) 방송실습제작실</p> <p>가) S,VHS 편집실</p> <p>(1) 기재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p> <p>(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p>나) 베타캠 편집실</p> <p>(1) 기재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p> <p>(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캠편집실 중 선택</p> <p>다) 녹음실</p> <p>(1) 기재실</p> <p>(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p> <p>(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나) 방송용 녹음기(BEER DECK) 1대 이상</p> <p>(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p> <p>(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p> <p>(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p> <p>(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p> <p>(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p> <p>(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p> <p>(자) MULTI TRACK RECORDER 1대</p> <p>(차) CASSETTE DECK 1대</p> <p>(카) COMPACT DISK 1대</p> <p>(타) 방송용 음반장동기(TURN TABLE) 1대</p> <p>라) 야외녹화 장비</p> <p>(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p> <p>(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p> <p>(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p>47. 방송</p> <p>나) 베타캠 편집실</p> <p>(1) 기재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p> <p>(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p> <p>(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p> <p>(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p> <p>(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p> <p>(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p> <p>* 가) S.VHS 편집실과 나) 베타캠편집실 중 선택</p> <p>다) 녹음실</p> <p>(1) 기재실</p> <p>(가) 녹음조정실 : 15㎡ 이상</p> <p>(나) 녹음 스튜디오 : 15㎡ 이상</p> <p>(2) 설비 및 교구</p> <p>(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p> <p>(나) 방송용 녹음기(BEER DECK) 1대 이상</p> <p>(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p> <p>(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p> <p>(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p> <p>(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p> <p>(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p> <p>(아) 영상 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p> <p>(자) MULTI TRACK RECORDER 1대</p> <p>(차) CASSETTE DECK 1대</p> <p>(카) COMPACT DISK 1대</p> <p>(타) 방송용 음반장동기(TURN TABLE) 1대</p> <p>라) 야외녹화 장비</p> <p>(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p> <p>(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p> <p>(3) 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현행		개정안	
[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우선방송인 경우에는 '다' 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p> <p>2) 방송제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이나운상리porter 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 목 및 '나' 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p> <p>6) 편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p>	47. 방송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p>1) 종합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우선방송인 경우에는 '다' 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p> <p>2) 방송제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방송기술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4) 이나운상리porter 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 과정 가) '가' 목 및 '나' 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 30㎡ 이상</p> <p>6) 편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7) 촬영·영상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8) 조명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9) 음향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p> <p>10) 성우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3)의 다)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7. 방송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 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ULTIPLEXE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ULTIPLEXE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 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0Hz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7. 방송	<p>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 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ULTIPLEXE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ULTIPLEXE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 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00Hz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8. 캐릭터(character)	<p>가. 시설 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적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8. 캐릭터(character)	<p>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음·면적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5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1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49. 관광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관광도서 30종 이상</p> <p>(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p> <p>(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p> <p>(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49. 관광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관광도서 30종 이상</p> <p>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p> <p>3) 고적, 명승지안내도 반별 각 1매</p> <p>4) 반당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p>가. 시설</p> <p>1) 음악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악기과정</p> <p>가) 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p> <p>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p> <p>가) 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p>가. 시설</p> <p>음악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p> <p>1) 악기과정</p> <p>주요실습용 악기 5대 이상</p> <p>2) 실용음악과정(성악과정)</p> <p>악기 5대 이상 (단, 성악과정은 악기 1대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3. 미술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3. 미술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서양화(소묘, 수채화), 동양화(한국화) 등 교습 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56. 서예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베틀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p> <p>2) 서법도서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6. 서예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베틀 1인당 1대, 먹 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p> <p>2) 서법도서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7. 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에 등), 도예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57. 공예(종이접기,꽃꽂이,꽃기에 등), 도예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58. 만화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라이트박스 1인당 1조</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8. 만화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라이트박스 1인당 1조</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9.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 모델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p> <p>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 1조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59. 연기(연극,뮤지컬,오페라), 모델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모델, 무대예술, 배우과정</p> <p>: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 1조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실험·실습·실기시설의 규모와 설비·교구의 종류 및 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p>[별표 3]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2조의3 제3항 관련)</p>	
교습과정	반당 시설·설비·교구기준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60. 웅변, 화술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60. 웅변, 화술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p>
61. 마술 (매직)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마술교구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1. 마술 (매직)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마술교구 10종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2. 바둑	<p>가. 시설</p> <p>1) 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바둑판 20조 이상</p> <p>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2. 바둑	<p>가. 시설</p> <p>실습실 : 60㎡ 이상 (음·면지역 45㎡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바둑판 20조 이상</p> <p>2) 바둑 해설판 2조 이상</p> <p>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63. 독서실	<p>가. 시설</p> <p>1) 실습실 : 90㎡ 이상 (음·면지역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p>	63. 독서실	<p>가. 시설</p> <p>실습실 : 90㎡ 이상 (음·면지역 6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이상, 세로 58cm 이상)</p>

현행	개정안
<p>[별표 7]</p> <p style="text-align: center;">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제2조의6 관련)</p> <p>1. 시설 : 사무실 30㎡ 이상</p> <p>2.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p> <p>가. 구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5) <u>항온항습기</u> 1대 이상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7) 보안수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p>나. 임차</p> <p>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u>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u>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p>	<p>[별표 7]</p> <p style="text-align: center;">원격교습학원의 시설·설비기준(제2조의6 관련)</p> <p>1. 설비 및 교구: 가목 또는 나목 중 선택</p> <p>가. 구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화벽(Firewall) 1대 이상 2) 침입방지시스템(IPS) 1대 이상 * 방화벽 및 IPS기능이 있는 통합보안장비(UTM)로 대체 가능 3)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 이상 4) 무정전전원장치(UPS) 1대 이상 5) <u>항온항습기</u> 1대 이상 6) 자동소화기기 1대 이상 7) 보안수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컴퓨터와 웹서버간 암호화 통신(SSL) 적용 나) 회원가입 시 공공 I-PIN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 다) 회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라) 시스템실은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운영 <p>나. 임차</p> <p>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u>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u> 등과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할 경우 보안서비스(방화벽, IPS 기능 포함) 적용 등은 위 보안수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p>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등록예정	2. 구분							
	학원 교습과정 신설·추가 및 학원 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 상향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미래학교혁신과 평생교육팀장 김미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학원(4,322개소) 및 교습소(1,547개소) ('22.8.1. 기준) - 이해관계자: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 관련부처: 교육지원청(5개청)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내용	○ 학원 교습과정 신설·추가,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마련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애견훈련 과정 등 ○ 학원 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 상향 〈현행〉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변경〉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7. 규제체계도	규제사항 마련 ⇒ 피규제자들의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시 의무 준수 ⇒ 이해관계자(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보장 및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비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배경과 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학원 교습과정의 규모,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별 개별 법령을 근거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원법도 재난안전법에 의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에 해당되어 관련 법에 따라 배상금의 한도액을 상향하고자 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비하여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1 ~ 별표3)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정보분야’와 ‘정보계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의 교습과정을 신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의 일반서비스 계열에 ‘애견미용’ 교습과정 ‘애견미용·훈련’으로 개정하여 ‘애견훈련’ 교습과정을 신설
 - 현행 ‘인문사회’ 분야와 ‘인문사회’ 계열에 ‘자연’ 분야와 계열을 추가함
 - 교습과정 신설 및 교습과 학습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동차’와 ‘애견훈련’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함
- 현재 「학원법」 및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가입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학생의 안전과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재난안전 의무보험의 배상금액을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1억5천만원으로 상향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 책임배상보험 배상금액을 상향하는 하는 것으로,
- 사회적 또는 법제상 제약요소가 없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학원 등의 합리적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수요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며, 학생들의 안전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규제의 비용분석

-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마련에 따른 별도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
-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상향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학원 등의 여건에 따라 소액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부담액은 경미함. 다만 보험이나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기준미달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 보험이나 공제사업 미가입: 벌점 15점 부과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미달: 벌점 9점 부과

② 규제의 편익 분석

-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하고, 신설·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학습자)들의 학원·교습소의 합리적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 또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장금액 상향은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움

③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규제에 따른 추가 보험 부담액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원·교습소 운영의 다양성, 학습자들의 선택권 보장,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액의 안정적 확보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피규제자들이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규제내용으로 이해관계자(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안전 및 편익을 확대·보장하기 위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규제내용은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입장

- 교습과정을 신설·추가함으로써 이용자(학습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의 상향으로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육시설의 사회적 가치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규제의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원법 시행령」과 「학원 조례」에 의거 의무 불이행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